

# 2019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 2019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의견서

발 행 일 2018. 11. 5

발 행 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락02-712-8443, spark946@hanmail.net담당조승현 평화군축팀장 (010-2440-5749)

# 차례

(1) 장교 인건비(1101-151)	 1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8101-882)	 9
(171) 군사정보활동(7131-302)	 15
(155)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513-302)	 21
(155)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5131-304)	 27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30
전투예비탄약 등 확산탄	 34
(163)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 (2533-307)	 38
(164)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2533-308)	 42
(158) 철매-표 성능 개량(2532-339)	 46
(134)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R&D)(2531-314)	 49
(113)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2432-308)	 54
(112) 상륙기동헬기 (2432-307)	 60
(129) 대형기동헬기 2차 (2433-302)	 64
(127) F-35A (2433-300)	 68
현무 2차 성능개량 양산 (2532-341)	 73
(13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2531-315)	 77
(43) K-2 전차(2232-302)	 80
(105) 장보고-Ⅲ Batch- I (2332-322)	 85
(91)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88
(147/150)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수직형)	 94
(34)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2133-300)	 98
(139) 전투예비탄약중 155mm 전단탄	 102

### (1) 장교 인건비(1101-151)

#### 1. 개요

(단위 : 억 원)

소관	사업 성격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안 (B)	증가 (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43,013	43,271	258	7,632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사업 목적> 장교 71,064명 및 사관후보생 4,510명의 봉급 및 제 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 ② **<2019년 장교인건비 증액 사유>** '공통처우개선 소요' 264억 원, '국방개혁 2.0의 간부 구조개혁을 위한 군 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증원 소요' 213억 원 등.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장성정원 감축에 소극적인 국방개혁 20

- 국방개혁 2.0의 **'장군정원 조정 계획'은** 장성정원 436명(2017년 기준)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 하의 내년도 장성정원은 405명으로 2018년보다 22명이 준 것이다.

**<표1> 장성 정원 추이** (단위 : 명)

회계연도	1975	2012	2016	2017	2018	2019
정원	360	444	437	436	427	405

- 그러나 위 '장군정원 조정 계획'은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조정' 계획이지 장성의 과감한 감축에 역점을 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조정 결과 줄어드는 장성 정원 규모 (76명)는 아주 제한적이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 계획되거나 검토된 안(60~100명 감축

안)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이고 어정쩡한 장군정원 조정 계획은 국방개혁 2.0이 스스로 표방하는 작고 강한 군대 건설 및 선진화된 국방운영의 기조에 전 혀 부합되지 않는다.

- 송영무 국방장관(당시)은 국회에서 "장성 수는 한국군의 현대화가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그 숫자에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줄여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2018. 8. 24. 44쪽)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왜 하필 1975년 장성정원(360명)이 국방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1975년과 지금은 남북관계나 우리 군의 전력수준, 남북군사력 균형, 전쟁양상 등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1975년 당시 한국군 병력은 60만이었지만 2022년 한국군의 병력은 50만으로 준다. 1975년과 비교해 병력이 10만 명이나 적다는 점에서도 1975년의 장성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국방부는 장군(장성) 정원 조정 원칙으로 '우선원칙', '전환원칙', '균형원칙', '제한원칙' 4가지 를 꼽고 있다. 우선원칙은 '전투부대 중심 우선 편성'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군단 및 상비 사단의 부지휘관 100% 장군 편성"과 "해군 정보단장, 공군 항공정보단장 등은 장성으로 상 향 편성"(국방부, "주요 국방현안": 임시국회 보고자료, 2018. 8. 24.)한다는 것이다. 장성정 원 조정의 첫 번째 원칙이 장성을 감축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장성직위를 늘리기 위한 원 칙이다. 이는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 계획이 장성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뜻한다. 과연 이런 '우선원칙'이 일말의 타당성이라 도 있는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부군단장이나 부사단장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또 부군단장 이나 상비사단의 부지휘관을 장성으로 보임해야만 전투력이 발휘된다고 하는 것도 억지스럽 다. 현재 군단이 8개이고 상비사단이 22개이므로 만약 이들 부지휘관을 장성으로 보임하면 그것만으로 장성직위는 40명(상비사단은 부사단장이 1~2명이다)이 넘게 된다. 360명의 장성 직위 중 10% 이상이 군단과 상비사단 부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 는가? 더욱이 부사단장 직위가 전역을 앞둔 장성들을 임시적으로 보임하는 자리로 이용되어 온 그간의 관행을 생각하면 부사단장 직위에 장성을 보임한다는 국방개혁 2.0의 계획은 아무 리 '전투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장성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해군 정보단장이나 공군 항공정보단장의 경우도 굳이 장성으로 상향 편성할 이유 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우선원칙'이란 것이 선진적인 국방인력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성정원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의 원칙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 '전환원칙'은 "비전투부대 직위 중 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비전투부대의 예로는 "국방부, 국직, 교육·군수·행정부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전환원칙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군령보좌 등을 위한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문민화를 추진"하고 "근무지원단장, 체육부대장 등 비전투 행정업무 수행부대 부서장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전환원칙'이 의미를 가지려면 '문민화'라는 대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데,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상위 개념이 되어야 할 '문민화'가 오히려 '전환원 칙'의 구색 맞추기로 이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환원칙'에 의해 국방부 본부나 방위사업 청의 현직 장성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도 군령 보좌 등 필수직 위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더욱이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이 되면 장성 출신이라도 민간인으로 간주해주는 이른바 문민간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 시민단체는 실·국장에 예비역장성을 임명하는 것을 무늬만 문민화라고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간주 기준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예비역 장성을 실·국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전환원칙'이 문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성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균형원칙'은 3군 본부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각 군간 유사임무·기능에 대해 동일계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의 특수성 및 예하부대 규모를 고려해 균형 되게 조정"한다는 원칙이다. 해군본부나 공군본부와 비교해 육군본부의 경우 계급이 상향되어 있는데(가령 같은 차장직위라고 해도 해군이나 공군은 대령급인데 육군은 준장계급이 맡는다) 이를 3군이 동일한 계급으로 한다는 것이 균형이다. 이 균형원칙은 육군의 계급이 타군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다는 해공군의 불만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균형원칙'은 국방개혁의 기본적목표인 3군 균형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방개혁 2.0의 장군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2022년 장성정원 감축이 완료된 뒤 각 군의 장성비율은 육군 4.6 대 해군 1.1 대 공군 1.0으로 된다. 여전히 장성수는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육군 중심의 현행 군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결국 '균형원칙'이란 현행 육군 중심의 군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해공군의 표괴적인 불만을 다소 무마하기 위한 원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제한원칙'은 비전투분야 지휘관의 과도한 계급상향을 제한하는 원칙인데 이것 역시 일관성이 없다. 가령 육군본부의 경우 결제라인이 부장(소장)-차장(준장)-과장(대령)으로 되어 있는데 차장만 없애도 장성직위를 20명 줄일 수 있다고 한다.(내일신문, 2012. 7. 30.) 하지만 '장성정원 조정계획'에는 이런 조직슬림화 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전투부대든 행정부대든 과도한 계급상향이 제한되어야 마땅한데 비전투부대에 대해서만 '제한원칙'을 적용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김중로 의원은 "특전사 여단장이 장군이에요 이게 맞느냐고 저는 생각이 특전사령관 투 스타에 참모장 원 스타 하나 하고 (여단장은) 대령으로 다 채워야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려면 젊은 사람이 좋습니까, 늙은 사람이 좋습니까? ··· 이게(특전사 여단) 무슨장군이 앉을 자리냐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군에 수북합니다, 수북해."(국방위 회의록, 2017. 8. 21.)라고 하면서 전투조직의 특성에 맞지 않게 계급이 상향된 예로 특전사 여단장을 지적하고 있다. 특전사 여단은 모두 6개이므로 계급을 하향조정하면 그것만으로도 장성 6명을 줄일수 있다. 제한원칙 역시 장성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원칙일 뿐이다.
- 장성인력의 비대화를 용인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군인사법 제16조 2의 1항 단서 조항이다. 이 단서조항은 정원 외로 장성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

14조의 3항(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은 무려 7개 항목에 걸쳐서 정식 편제 정원 외로 운용할수 있는 장성 직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부수병력을 광범하게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장성수가 불필요하게 팽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식 편제 정원 외에 장성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한 이 군인사법 제16조 2의 단서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계획'은 이 정원 외 장성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나 언급이 없다.

- 한마디로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 계획은 육군 중심의 군구조나 장성 기득권의 보호에 기반하고 있는 등 과거 관행과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만한 국방인력 운영을 선진화·효율화하고 비대하고 중복된 군조직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400명 수준의 장성을 그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중로 의원도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2017. 8. 21. 국방위)라고 하여 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장성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장군정원조정계획'은 작지만 강한 군대나 선진적 국방운영에 부합되게 재작성 되어야 할 것이다.
- 남과 북은 분단과 한국전쟁 이래 계속되어 온 대결과 적대를 끝내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고 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및 그 이행합의서 격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국방개혁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정세로부터 제기되는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축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이런 정세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시대착오적인 국방개혁이다. 병력규모 50만 명은 대북 공격작전(점령)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모다. 병력은 앞으로 합리적 방어 충분성 개념에 입각해 30만 명, 나아가 20만 명 이하로 차차 줄여야 한다. 50만 명 병력규모로의 감축은 인구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병력축소이지 국방개혁이라 할 수 없다. 장성 감축은 장성 기득권 보호에 중심을 둔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정세 요구를 담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에 부응할 수 있게 재작성 되어야 한다.

#### ② 선진적 국방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포화상태인 고급장교 인력을 늘리는 국방부

- 영관계급 정원은 2017년 21,050명에서 2018년 21,310명으로 260명이 늘었으며 2019년에는 21,333명으로 다시 23명이 더 늘어난다. 이처럼 영관계급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간부 계급구조 개편을 위한 장교 증감 소요"(국방부, 『2019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Ⅱ-1』, 2018. 9. 68쪽)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관계급 정원이 계속 느는 것은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는 중령 이상의 고급장 교가 인건비 압박, 군인연금 지출 압박, 정원 외 초과운영, 과도한 진급경쟁, 군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 국방부 본부에 대해서 보면 2017년 2월 말 현재 현역군인 정원은 299명이고 이중 장성과

대령, 중령 정원이 각각 8명, 24명, 181명이다. 또 방위사업청의 군인 현원은 2018년 3월 현재 470명으로 이 중 장성이 7명, 대령이 53명, 중령이 165명, 소령이하가 245명에 이른다. 이들 군인은 문민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인으로 교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대령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영관장교 정원이 2019년에 는 것은 고급장교 감축 의지가 없음을 말해준다.

- 국방부는 1993년 7월 6일 "군 정원 및 인력 구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993년 당시 영관장교의 정원은 17,870명이었는데 실제 운영인력은 19,053명으로 무려 1,183명이 정원 외 초과 운영되고 있었다. 대령이 정원 1,881명보다 358명 초과 운영되었고 중령은 정원이 5,643명이었는데 최소 525명 초과 운영되었고, 소령은 정원이 10,346명인데 정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성도 정원(434명)보다 무려 62명이 정원 초과되었다. 1992년 7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던 고급장교 1,000여명을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군 정원 조정안'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또 다시 1,000여명 이상의 고급장교가 정원 외 초과 운영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불법적인고급장교 인력의 정원 초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국방부는 1993년 7월 "군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개선안은 대령 정원을 1,881명(당시 정원)수준에서 동결하고 대령과 중령과 소령의 비율을 1:3:5.5에서 1:2.5:4.5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국방부의 기준(1993년 안)대로 하면 영관장교 정원은 15,425명(대령 1,881명, 중령 5,079명, 소령 8,465명)이 되어야 한다. 2019년 예산편성 영관장교 정원은 21,333명인 바,이는 1993년 국방부의 기준대로 하면 5,908명을 초과한 것이다.

#### ③ 납득되지 않는 준위 정원의 단계적 감축

- 장교 인건비는 매년 수백억 원의 불용액을 낳고 있는데 그 중 상당한 액수가 육군 준위의 과도한 정원 때문이다. 2017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면 장교 인건비의 불용액이 487억 원으로 2016년 236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2017 회계연도의 육군 준위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인력 운영률(예상 운영률)을 97.2%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2017년 육군준위의 실제 인력 운영률은 91.2%에 불과하였다. 이는 육군 준위의 인건비가 실제 필요한 인건비보다 6%이 상 과도하게 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서도 각기 자기 군의 준위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예상되는 인력 운영률을 적용하였지만 그것과 실제 운영률의 차이는 육군만큼 크지 않았다. 2017 회계연도 준위의 예산편성 정원은 6,428명이다. 2017년 실제 준위의 운영인원은 각 군(육군이나 해군, 공군, 해병대)의 실제 인력 운영률(국회 국방위, 『국방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8. 8. 38쪽 도표 참조)을 적용해 추산해 본 결과 대략 5,977명으로 나타났다. 정원이 실제 운영인원(현원)보다 무려 451명(추정치)비이나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준위의 2017 회계연도 인건비가 최소한 7.0%

<sup>1) 2017</sup>년도 전체 준위 정원 6,428명 중 각 군의 준위 정원은 전체 장교(7.1만 명)에서 각 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상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 2017년에 준위 정원이 실제 운영인원(현원)보다 451명이나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2019년 준위 정원(6,370명)은 2017년에 비해 불과 58명이 줄 뿐이다. 이처럼 준위 정원 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국방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준위의 정원을 2017년부터 2025년 까지 9년간 61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려 9년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준위 정원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감축대상이 되는 준위는 전문·기술 분야가 아닌 비기술직위가 대부분이라고한다. 이는 당장 611명을 감축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특히 육군이실제 운용하는 인력보다 턱없이 높게 정원을 설정해 놓고 그 정원마저 9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매년 수백억의 장교인건비 불용액이 생겨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매우 독선적 태도이자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 국회는 준위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여 쓸데없는 인건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

#### ④ 군사독재 잔재를 남기고 있는 2019년도 장교 인건비 예산안

- <표2>는 같은 직급(직위)인데도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본부)에서 같은 과장직책(4급)을 맡고 있어도 군인(대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이 221만 원 가량 더 많다. 담당급(5급)의 경우에는 군인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월급이 209만 원 더 많다. 이런 차이는 군인의 경우 두 직급 높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표2>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비교(2018년도 기준) (천원 이하 절사)

	과장급(4급)	담당급(5급)
군인	1억 1,138만 원(대령) 9,392만 원(종	
일반직 공무원	8,492만 원	6,885만 원
연봉차액(월급차액)	2,646만 원(월 221만 원)	2,507만 원(월 209만 원)

자료출처 :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18년 10월 25일 청구)

- 군인과 공무원의 대우 차이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국 무총리훈령 제157호, 1980. 7. 29. 제정)및 총무처 예규 219호(1986. 6. 17.)에 따른 것이다. 이런 관행은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이다.
-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군인을 2직급 높게 대우하는 것은 군의 문민화라는 관점에서도 시

급히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다. 대장의 경우 장관급 예우를 받는데 국방부의 대장보직은 8 명이므로 한 부처에 장관급이 9명이 있는 셈이다. 차관은 부처에서 서열 2위이지만 국방부에서는 서열 10위가 된다. 군예식령(대통령령 제27620호)의 예우표(별표1)를 보면 차관의의전순위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대장(1,2,3군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후순위로 정하고 있다. 이런 상궤를 벗어난 국방부 내 서열은 문민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또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군인에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팽창시켜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한다.

-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군인이 받는 특별 예우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직급으로 보면 차관보급(1급)에 위치한다. 한국 대장 은 미국과 비교해서도 2직급이 더 높다.
-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특수 계급 제도를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같은 직책이라도 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 또군인 예우지침은 군인을 특수한 신분집단으로 예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2항에 위배된다.
-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 관행의 근거가 되는 군인 예우지침 및 군예식령은 폐지돼야 한다.

#### 4. 결론과 제안 :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 ① 2019 회계연도 장성 정원에서 28명을 줄인다.
- 2019~2022년 4년 간 장성 정원 200명을 감축하는 목표 하에 매년 50명의 장성 정원을 감축한다.
-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2019년 한해에 장성정원 22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차이인 28명의 장성 인건비를 삭감한다.
- 2019년도 소장 1명의 평균연봉은 1억 23백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장성 28명 감축으로 절약되는 인건비 예산은 약 34억 원이다. 이는 봉급에 국한되는 비용이고 장성 유지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 ② 대령과 중령을 위주로 영관장교 정원을 5,908명 줄인다.

- 2019년 대령 연봉은 대략 1억 180만 원, 중령은 9,980만 원이다.
- 대령과 중령계급의 정확한 정원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령과 중령의 평균 연봉 1억 800 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영관장교 5,908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은 연간 6,381억 원이다.

#### ③ 준위정원을 600명 줄인다.

- 2019년도 준위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428만 원으로 추산한다.
- 준위 정원 600명을 줄이면 인거비를 506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 ④ 군인 예우 지침 폐기 시, 절약되는 장교 인건비

- 2019년 장교 정원(사관후보생 제외)은 71,064명이다.
- 군인 예우 지침에 따른 봉급 증가 효과가 월 100만으로 치면 군인 예우 지침을 폐기할 경우, 장교 인건비는 연 711억 원이 절약된다.

#### 5. 삭감요구액

장교인건비 중 7,632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 1. 개요

(단위: 억원)

소관	사업 성격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안 (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26,076	27,278	1,202	8,394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예산내역

- ① <사업목적>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소요(일반회계 전출금)"
- ② <2019년 예산안 내역> 국가부담금(기여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전투가산 부담금 등) 1조 1,538억 원 및 보전금 1조 5,740억 원(국방부, 『2019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8. 9. 156쪽)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군인연금 보전금에 따른 국가재정 및 국방비 압박이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은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2019년 기준)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9.7%이지만 군인 연금은 그 4.8배인 46.8%에 이른다. 군인연금 지급의 거의 절반을 군인연금에 책 임이 없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도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보 전금은 1조 5,740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4.2%(640억 원)가 늘어난다. 반면 공무 원연금은 국가보전금이 1조 6,794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41.1%(1조 1,700억 원) 가 줄어든다. 이처럼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보전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2016년에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한데 반해 군 인연금은 저부담·고급여체계의 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1> 군인연금 보전금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전금	13,431	13,665	14,657	15,100	15,740

- 2017년 군인연금의 1명 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26만 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57만 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명 당 기여금 납부액이 연간 434만 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29만 원이다. 즉 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기여금을 내고도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2018. 8. 240쪽 참조). 군인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7.0%로 공무원연금 9.0%에 비해 낮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은 1.9%로 공무원연금의 1.7%보다 높다.

#### <표2>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2017년

(단위: 명, 백만원)

			(11. 0, 7111)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납부자 수	182,204	1,120,458
기여금	기여금수입 총액	594,602	4,867,633
	1인당 기여금연액(만원)	326	434
	수급자 수	71,055	419,968
퇴역연금	퇴역연금지급 총액	2,194,969	11,542,906
	1인당 퇴역연금월액(만원)	257	229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2018. 8. 240쪽

#### ② 군인연금 적자의 주원인은 과도한 특혜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이 다른 특수직역 연금보다 심한 것은 각종 특혜 때문이다. 군인 연금은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 줌),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권을 주고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군인연금의 특혜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 등 군 복무의 특성에 따른 보상이지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군인연금에 주어지는,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특혜들은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군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시행된 것들이다. 즉 이들 특권은 문민통제가 확립되기 이전 군인 우위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일반적인 연금의 복지적 성격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기반 강화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것이다.

- 가령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에게 지급되었던 군인은급 (연금)을 모방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다. 그리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 하였던 군인들은 매달 참전명예수당(2017년 월 22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라 하겠다. 또 격오지 근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등의 복무 특성을 내세우지만, 현직 때 군인들은 이미 격오지 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
- 국방부는 '전역 즉시 연금지급' 제도에 대해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의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역"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재생산비 개념인 봉급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보장개념인 군인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전역한다면 이는 사회 재취업 등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책이며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는 직업군인 전역자에 대한 재취업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2017년 전역자(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의 취업률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55.4%2)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 60.4%(통계청 조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가입대상자 가운데 생애최대지출기라고 하는 45~56세에 퇴직하는 군인은 2017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6,991명 중 2,347명으로 ⅓(33.6%)에 불과하다. 이런 일부 퇴직자의 이익을 위주로 군인연금의 제도를 설계한다면 군인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소수 특권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 군인연금의 특혜는 그 수혜가 고급장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고급장교(현역)는 그 수가 군 간부(2017년 현재 대략 19.5만 명)의 5~6%에 불과하지만연금수급자의 30.5%(2017년 기준)를 차지한다. 또 고급장교는 월 연금 250만 원 이상 수혜자(24,393명)의 53.9%를 차지한다.(국방부,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서 산출)

#### ③ 군인연금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 우선 개혁해야 할 부분은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전역 즉시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군인 연금은 도입된 이래 평균 수명이 52세(1960년)에서 2012년 81세로 연장되었고 그 결과 25년에서 많으면 35년 넘는 수급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 장기간의 수급으로 인한 연금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 국방부는

<sup>2)</sup>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2018년 10월 25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이 전역자의 취업 기준은 통계청의 취업기준과 비교해 훨씬 높다. 전역자의 취업기준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전역자라 해도 실업으로 간주된다. 또 통계청은 주당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전역자 취업률은 월 소득이 2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를 취업자로 본다. 따라서 전역자 취업률은 통계청의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조사된 취업률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즉시 지급(미국, 프랑스, 대만 등)"한다면서》 2013년에 기획재정부 등의 65세 수급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역즉시 연금수급은 외국의 일반적 사례가 아니다. 스웨덴은 군인을 국가공무원의 일원으로 취급하는데 연금지급은 대령 이하는 60세부터, 장성급은 65세부터 지급한다. 일본, 이탈리아, 호주는 60세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다. '전역즉시'지급하던 호주와 영국은 각각 60세와 55세로 지급연령을 늦추었다. 미국은 60세로 연장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계급별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인(공무원과 같은 신분)은 정년 시(부사관은 55세, 위관급과 소령은 60세, 중령 61세, 대령이상 62세)에 연금이 지급되며 계약 군인(전체병력의 60%차지)의 경우 군인연금은 65~67세에 지급된다.4)

- 또 개혁해야 할 부분은 전투가산 부담금 문제다.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가산 부담금은 이 규정에 따라 군인연금 가입자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제도다.
- <표3>을 보면 전투기간 3배 계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15년 635억 원, 2016년 653억 원, 2017년 639억 원, 2018년 579억 원, 2019년 524억 원으로 해마다 기여 금부담금의 10% 안팎이다.

**<표3> 전투가산금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투가산부담금	635	653	639	579	524
그기버다그	기여금 부담금	5,493	5,775	6,063	6,535	6,753
국가부담금	기타 부담금	3,768	3,900	3,687	3,862	4,261
	계	9,896	10,328	10,389	10,976	11,538

자료출처 : 평화통일연구소에서 각 년도 국방부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작성

-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은 65세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월 22만원(2017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2018년 참전명예수당(국가보훈처 예산)은 총액이 7,696억 원이다.
-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숫자 가 2,878명이다.5) 전투가산 혜택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들도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sup>3)</sup> 국방부 보도자료(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 2013. 3. 27. 2쪽.

<sup>4)</sup> 독일 군인조합(German Military Union)과 독일시민단체 등에 2014년 10월에 문의한 결과임. 김영태, "직업 군인의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논문, 2012. 39쪽 참조

때문에 이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투기간 3배 계산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군인연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군국 주의의 유산이다.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상적 시점에서 생명기간을 전시와 같이 볼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6) 일본의 경우 패전 뒤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이 통합되었고 군인우대제도도 없어졌다.

#### ④ 정부는 국민의 군인연금 전면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국회 국방위는 「2014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2014년도 국가부담금과 보전금 규모가 수입액의 82%로 국가재정 의존이 과도하며 2045년 및 2060년에도 지출의 50% 이상을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군인연금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2013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지엽적 개정에 그침으로써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 국회는 다시 2015 회계연도 결산 국방위 회의에서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방비 및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군인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기금보유 부동산 매각 추진,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금융자산을 증대하여 이자수입 증대'(국방부, 『2018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7. 9. 1,896쪽)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를 취한 뒤로도 국가보전금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부담・고급여의 군인연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결코 일과성이 아니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군인)연금 전체가 현재도 정부재정에서 거의 반이상을 적자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적자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시지요?"라는 민홍철 의원 질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연금은 GDP 대비 0.1%에서 0.12%(이며), 10년 동안 아주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국회 국방위회의록 2018. 8. 24. 24쪽)라고 답변하였다. 이런 국방장관의 답변은 저부담·고급여로 인한군인연금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매년 1조원이 훨씬 넘는 돈(2018년 1조 51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여기고 있는 태도로서 군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다. 이런 국방부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공

<sup>5)</sup>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임.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및 공비토 벌작전 전투가산자, 연금수급 후 사망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보유중인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자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된 숫자라고 함.

<sup>6)</sup> 오광석,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3. 12쪽

무원연금이 2016년에 기여율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연금액 한시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조정 등의 개혁을 실시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책임하다.

- 문재인 정부는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군인연금 수혜자의 반발을 두려워해 사실상 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지출혁신과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검토하였으나 올해 8월 10일 선정한 지출 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제외시켰다.
- 지금 국회에 정부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 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능적이고 지엽적인 개정에 머물고 있다.
- 정부가 지출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을 제외시키고 국회에 지엽적인 조문정비 차원에서 군 인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인 군인연금의 전면적 개혁을 포기한 것이다.

#### 4. 결론과 대안

- 국회는 군인연금법의 전면 개정을 끌어내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보전금의 절 반을 삭감한다.
- 2019년도 전투가산 부담금(524억 원)은 과거 군사독재 잔재 청산, 이중특혜 폐기, 국가재정 부담 완화 등의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다.

#### 5. 삭감 요구액

2019년도 보전금예산 1조 5,740억 원의 절반인 7,870억 원과 전투가산 부담금 524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 (171) 군사정보활동 (7131-302)

#### 1. 개요

#### 2018년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안)

(단위: 억원)

人司	기어서거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삭감
소관 사업성격	(A)	(B)	(B-A)	요구액	
국방부	계속	1,477	1,368	-109	1,368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정보활동' 사업의 목적

- 군사정보활동의 사업목적은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국방부, 『2019년도 국방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8. 9. 1,409쪽)으로 되어있다.
- 2019 회계연도 군사정보활동 예산(안)은 1,368억 원으로 그 전액이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 이 특수활동비는 전액이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다.
- 2018년까지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있었으나 2019 회계연도에는 국방부가 자체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없다. 참고로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정부안)은 국방부 1,368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2,876억 원(국정원 본예산 제외)으로 2018년 3,168억 원보다 292억 원이 감소했다.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 특수활동비는 정부에 의해서 예산의 한 비목으로 편성되지만 다른 비목의 예산과 달리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계상되고 집행 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집행내용 확인서의 구비까지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요구"(『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 4. 206쪽)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정부의 예산편성 책임부서가 각 부처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원칙으로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 참여 제고 노력', '국민부담의 최소화' 등의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이)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제56조)을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런 예산 및 결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 기획재정부의 지 침대로 하면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사업 목적과 세부적인 예산 내역, 산출근거 등 을 알 수 없고 또 결산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국가재정법(제29조)은 "기획재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임의적으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 할 수 있다.
- 특수활동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부의 지속적 편성으로 관행이 되었다. 특수활동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횡행하던 '판공비'(품위유지비)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런 관행이 폐지되지 않고 '특수활동비'로 이름을 바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라져야 한다.

#### ②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특수활동비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국정원의 이름으로 편성된 사업비)과 타 부처 예산에 끼워 넣은 예산(특수활동비 비목으로 분류됨), 예비비(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 받음)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원법 제12조 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비비는 그 근거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두고 있다.

#### <표1> 국정원 예산에 관한 각종 특례규정

	일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본예산)
예산안 제출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총액 제출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 제출 면제
예산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정보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사 생략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간주)
회계검사	·감사원의 회계 감사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감사

자료출처: 김정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7. 58쪽

-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12조(예산회계) ②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액만 제출하고 있으며 산출내역 등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정원법 제12조 ③항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 제12조 ⑤항은 국회정보위의 비공개 국정원 예산 심의와 예산 내역의 공개 및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법 제14조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소관 예산의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부터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재정당국과 회계감독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국정원의 예산이 재정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기획재정부 등) 통제 바깥에 있다."(2017. 10. 31.)는 김동연 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국정원법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정원법 제12조 ④항은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정보위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제12조 ⑤항은 국정원예산 심사를 국회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 ①항은 국회(정보위 등)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는 경우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회정보위에서도 사실은 총액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현실입니다."라는 권은회 의원의 하소연(2015. 10. 27.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공청회)은 국정원이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무기로 국회정보위의 예·결산 심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증언한다.
-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는 예산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의 원칙을 정한 국가 재정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감시와 감독기관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주며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침해한다. 국정원의 불법과 전횡, 횡포의 근간이 되는 이들 조항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③ 타 부처나 기관에 국정원 예산을 은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2019년도 국방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군사정보활동'(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사업의 명칭) 사업의 법적 근거로 국정원법 제3조 ①항을 들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항은 국정원 직무의 하나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는 기획·조정의 대상기관으로 통일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와 기타 정보 및 보안 업무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 제12조 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정원법 제3조나 제12조 ③항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 여러 기관 의 하나일 뿐임에도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부처나 기관의 정보예산 편성권까지 갖게 함으로써 마치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처럼 행세하면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국정원의 전횡은 2012년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여 정치공작을 수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국정원이 다른 부처의 업무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정부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조와 조정을 뛰어넘는 것이다.
- 또 국정원법 제12조 ③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가 재정법(제31조 등)에 어긋난다.

#### ④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

- 국정원법 제12조가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가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특수활동비의 법적인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 법조항들이 국정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거나 국가재정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사용처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초법적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국정원법 제12조 ④항은 국회정보위에 국정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 제12조 ②항에 의거해 예산의 세부내역이나 산출내역,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에는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법 제12조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국정원이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을 내세워 국회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멋대로 사용하다면 이는 불법이다.

#### ⑤ 국정원의 안보비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특수활동비와 다를 바 없다

- 문재인 정부는 2019 회계연도 국정원 본 예산 전체를 특수활동비(230목)로 분류하던 기존 관행을 바꿔 '안보비'(270목)로 분류하였다. 안보비 비목은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본 예산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 설정된 것이다. 참고로 2019년도 국정원 안보비는 2018년 4,631억 원 보다 21.1% 늘어난 5,61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안보비'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 4. 214쪽)에 적용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안보비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활동 세부 내역 보호를 위해 직·간접 소요 경비를 통합하여 총액으로 요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안보비의 편성범위, 편성절차, 편성 방식 등 편성 전반에 대한 자체 지침과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요구"한다는 등의 세부지침을 지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정원의 본 예산을 특수활동비 대신 안보비라는 새로운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법 제3조와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의 독소조항들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특수활동비에 내재한 본질적 문제점들은 안보비 비목 하에서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 안보비의 세부지침으로 '총액 요구'나 '해당 중앙관서 장의 자체 지침과 편성계획수립', '자체적인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안보비 역시기본 틀에서 특수활동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었든 안보비로 편성되었든 그 예산이 국정원법 제3조와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한 그 예산이 정당한 목적과 사업에 쓰이는지,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우리 국민이 감시·통제할 수 없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회복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국민 통제와 감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방부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4. 삭감요구액

#### ① 국방부 내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368억 원 전액 삭감

-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사업목적과 산출내역 등이 투명하지 않는 등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국방부를 부당하게 통제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의 온갖 불법과 비리, 전횡, 횡포의 근거가 되어 온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 (155)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302)

#### 1. 개요

(단위: 억원)

소관	사업성격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안 (B)	증감(B-A)	삭감요구액
국방부	계속	4,442	4,527	85	4,52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①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 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19년도 국방예 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8. 9. 1,295쪽)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

-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은 그 법적 근거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되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국방부)가 군사시설개선(군사건설비)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은 법적 근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불법이다.
- 법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안)의 국회 제출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국회가 내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심의·의결하면 그로써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의결한—국회가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10차 SMA가 체결·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이번 국회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군사시설개선 예산은 10차 SMA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가 임의로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어서 만약 10차 SMA가 한미 사이에 체결되면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이다. 또 국회가 10차 SMA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그전에 심의·의결한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국회가 10차 SMA 체결 (국회비준) 전에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심의·의결할 경우 자신이 확정한 군 사시설개선 예산을 국회 스스로 무효로 만드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10차 SMA 체결 및 국회비준과 동시에 또는 그 뒤에 군 사시설개선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2019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뒤에야 10차 SMA가 체결되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회는 자신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방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국익 훼손을 막는 길이다.

#### ② 2019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 산정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 10차 SMA 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는 임의로 2019 회계연도 군사시설예산을 4,52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제9차 SMA 총액 산정방식을 준용(해), 2018년 군사시설개선 배정액 4,442억 원에 2017년도 소비자 물가지수(1.9%)를 적용하여 2019년 배정액 4,527억 원을 산정"(국방부, 위 자료, 1,296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10차 SMA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산정하고 그 것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적인 것이지만, 설혹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의 산정방식은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9차 SMA에서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매해 60%정도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미국이 이전비 를 부담하는 LPP사업)에 쓰였고 나머지 40%는 기존 미군기지의 건설사업에 쓰였다. 그런 데 평택미군기지 이전 건설사업은 2017년까지 85%(국방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 2018. 8. 223쪽), 2018년 9월 현재 89% 완료되었으며 2018년까지 93% 완료될 것이 라고 한다.7) 물론 이는 한국이 공사 책임을 맡은 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공사진척도이긴 하 지만 한미가 사실상 공동으로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척 도는 미국측 건설사업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사실상 2018년이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 요인(최소한 60%)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쓰 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평택미군기지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군사건설비(군사시설개선) 소요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국방부가 2018년도 군사건설 예산에 물가상승률 1.9%만큼 더해서 2019년도 군사건설 예산 을 산정한 것은 군사건설비 감액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방부의 미국 봐주기 태도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sup>7) 2018</sup>년 10월 30일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의 통화내용임

끝나더라도 군사시설개선비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에 영합하는 것이다.

- 미국은 군사건설비(군사시설개선)를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쓰느라 기존 미공군기지의 시설개선사업에는 쓰지 못했다고 하면서 10차 SMA에서도 군사건설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군사건설비의 40% 정도가 매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에 쓰였고 또 군사건설비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현금만 3,292억 원이 남아있다.(2017년 12월 현재) 그리고 군사건설비를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느라 기존 미공군기지 건설사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지 한국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기존 미군기지 건설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남북 합의 및 북미 정상 간 합의로 인해 앞으로 주한미군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사건설비를 인상하는 것은 한 반도에 조성되는 새로운 정세에 맞지 않다.
- 이번 정부의 2019년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군사건설비를 기존 미 공군기지에 충분히 쓰지 않아 2019년 이후에도 군사건설비를 줄일 수 없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2019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군사건설비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한다.

#### ③ 대규모 미집행금액이 남아있다

- 2017년도 군사시설개선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739억 원, 불용액이 93억 원에 이른다. 2017년 한해에만 미집행금액이 무려 832억 원이다. 또 2017년 12월 말 현재 3,292억 원의 미집 행현금이 남아있다. 이 미집행현금은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 가운데 설계·감리비 조로 받은 현금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돈과 2002~2008년 사이 군사건설비에서 쓰지 않고 축적한 현금 중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합친 것이다. 이 미집행현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합치면 4,124억 원으로 2019년 군사건설비 예산(안) 4,527억 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 미집행금액에는 이밖에도 감액(협정액과 예산배정액의 차액)이 있다. 감액은 주로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2011~2017년 사이 누적된 감액이 5,571억 원에 이른다. 또 2009~2017년사이 발생한 불용액-주로 군사건설과 군수지원에서 발생하였음-은 962억 원에 이른다.
- 2017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액은 미집행현금 3,292억 원, 감액 5,571억 원, 불용액 962억 원, 2018년으로 이월된 금액 958억 원(군사건설비 739억 원과 군수지원비 219억 원)으로 이를 합치면 1조 783억 원에 이른다. 이 액수는 한 해 방위비분담금(2018년 9,602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설사 군사시설개선비가 전액 삭감되더라도 군사건설사업이 별 지장을 받지 않

을 것임을 말해준다.

#### ④ 군사건설비의 불법적인 사용 문제가 해소되었는가를 확인한 뒤 예산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 군사건설비는 매년 대략 60% 정도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는 것은 LPP 개정 협정 위반이다. 10차 SMA 협정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군사건설비의 사용 관행이 금지되지 않고 허용된다면 국회는 2019 회계연도 군사건설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그런데 10차 SMA 협정은 2018년 11월 현재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사용 문제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국회는 군사건설비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 9차 SMA 체결 협상(2014년 1월 9~11일) 때 박근혜 정부는 특정군사건설사업(SCIF 등)의 경우 총 군사건설사업비의 12%로 제한되어 있는 현금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미국 업체가 시공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면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9차 SMA가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은 이 이면합의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약정'(2014년 6월 18일) 속에 명시하였다. 특정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12% 한도를 넘어 현금을 지급하고 또 미국 기업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면합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에 위배된다. 위 교환각서에 의하면 현금지급은 설계와 감리(군사건설 총사업비의 12%로 제한)에만 한정되고 나머지 88%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위 교환각서는 한국이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한국 업체가 시공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회는 10차 SMA에서 특정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추가 현금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폐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회는 추가 현금지급에 관한 한미의 이면합의가 10차 SMA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 이후 군사건설비를 승인해야 한다.

# ⑤ 불용액에 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군사건설비를 승인 해야 한다

- 방위비분담금에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2009~2017년 사이 발생한 불용액의 합계는 962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불용액을 추후 미국이 요구하면 다시 주어 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 법적 근거로 8차 및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함께 체결한 '군사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7항을 들고 있다. 이 교환각서의 7항에는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 이에 국회국방위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2017. 8. 23. 전체국방위 회의)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는 불용액을 미국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군사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 서 7항과 같은 불평등한 규정들을 폐지하라는 요구라 할 수 있다.

- 국회는 10차 SMA에서 이런 불평등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을 확인한 뒤 군사시설개선 예산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아직 10차 SM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군사시설 개선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마땅하다.

#### ⑥ 사드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 10차 SMA 협상에서 한미 간 쟁점 중의 하나가 사드(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운영비부담 문제다. 미국은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사드는 주한미군 소유 장비로 그 운영비용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사드는 그 주 용도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도 사드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의해 사실상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사드 운영비를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드 남한 배치는 국제법적인구속력을 가진 외교문서(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없는 구두합의에 의해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사드의 남한 배치는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이사드 운영비에 국가재정(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 이에 10차 SMA에서 사드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한미가 합의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국가재정의 낭비다. 국회는 10차 SMA에서 사드 운영비에 방위 비분담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군사건설비를 승인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① 10차 SMA 협정이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의로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불법이다.
- ② 군사시설개선비 산정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숭인해서는 안 된다
- ③ 불용액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군사건설비의 불법적 집행 중단,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 이면 합의 무효화, 사드 운영비 지원 거부 등이 10차 SMA에서 받아들여 졌는지를 확인된 뒤 국회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5. 삭감요구액

내년도 군사건설비 4,527억 원 전액을 삭감을 요구한다.

# (155)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5131-304)

#### 1. 개요

(단위: 억원)

소관	사업성격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안 (B)	증감(B-A)	삭감요구액
국방부	계속	1,450	1,477	27	1,47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①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 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19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8. 9, 1302쪽)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

-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은 그 법적 근거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되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군수분야 예산 편성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 법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2019 회계연도 군수분야 예산(안)의 국회 제출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국회가 내년 군수분야 예산을 심의·의결하면 그로써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의결한 국회가 2019 회계연도 군수분야 예산을 10차 SMA가 체결(또는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이번 국회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수분야 예산은 10차 SMA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가 임의로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어서 만약 10차 SMA가 한미 사이에 체결되면 그에 맞춰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회가 심의 확정한 군수분야 예산은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이며 국회의 헌법 상 예산심의의결권이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국회가 스스로 자신이 심

의·의결한 군수분야 예산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면 10차 SMA 체결 및 국회비준동의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군수분야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2019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뒤에야 10차 SMA 국회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회가 헌법상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키고 우리 주권과 국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2019 회계연도 군수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② 국회는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10차 SMA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뒤 군수분야 예산(군수지원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올해 10월까지 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모두 8차례 열렸다. 여기서 미국은 줄기차게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소유장비와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또 주한미군의 모든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제5조), 한국 영역의 방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요구다.
-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위압적 태도에 눌려 군수지원의 한 항목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10차 SMA가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일부를 한국이 방위비분담 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국방부가 2019년도 군수분야 예산으로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1,477억 원은 총액으로 제출되어 있을 뿐 그 세부 내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1,477억 원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으로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한미 당국이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군수분야의 한 항목으로 하기로 10차 SMA 협상에서 합의한다면 이 1,477억 원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국회는 10차 SMA가 체결되면 그 때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이 방위비분담금 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분야 예산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불용액에 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군수분야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 방위비분담금의 불용액은 군사시설개선(군사건설)에서만이 아니라 군수분야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3~2017년 5년 간 군수분야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130억 원이며 이는 동기간 방위비분담금 전체 불용액 456억 원의 28.6%를 차지한다.
- 불용 사유를 보면 전부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국방부, 위 자료 1,305쪽 참조)이다. 즉 군수

분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남는 돈이다. 따라서 불용액은 정상적이라면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우리 국고로 회수되었다.

- 그러나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아래 교환각서 7항)는 규정을 담은 '군사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8차 및 9차 SMA(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각 부속 문서로 채택된 뒤부터 미국은 불용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라는 규정은 사실은 군사시설개선 (군사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군수분야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이 규정에 구애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군수분야의 불용액도 똑같이 군사시설 개선의 불용액처럼 미국에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이에 국회국방위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2017년 8월 23일 전체국방위 회의) 국회 의 제도개선 요구는 불용액을 미국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군사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 환각서 7항과 같은 불평등한 규정들을 폐지하라는 요구라 할 수 있다.
- 국회는 10차 SMA에서 이런 불평등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을 확인한 뒤 군수분야 예산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아직 10차 SM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군수분야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① 10차 SMA 협정이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의로 군수분야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불법이다.
- ② 군수분야 예산이 국회의 승인 없이 미 전략자산전개 비용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는 군수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③ 불용액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10차 SMA에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된 뒤 국회는 군수분야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내년도 군수분야 예산 1,477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 1. 개요

(단위: 억원)

소관	사업성격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안 (B)	증감 (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00	105	5	105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①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 ② 캠프 캐슬(북) 및 캠프 마켓 다이옥신 정화비 90억 원 등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캠프마켓 등 환경오염치유 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부당성

- 2019 회계연도 환경조사 및 치유예산 105억 원은 그 목적이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등의 다이옥신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다른 반환미군기지의 사례처럼 미국이 자신의 오염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신 오염 치유를 하기로 한 것임을 말해준다.
- 2017년 10월 27일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한미의 공동환경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캠프마켓의 토양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등이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나왔다. 특히 다이옥신류는 토양오염기준치(미국이나 독일 환경기준치)의 10배가 넘었다. 미국·독일 등에서는 토양 1g 당 1000pg-TEQ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캠프 마켓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검출 농도 1만347pg-TEQ는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다. 아연이나 납, 폴리클로리네티드비페닐,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의 최고농도도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 캠프마켓 및 캠프캐슬(북)의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비용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편성한 것은 결국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된 대미 협상에서 우리의 환경주권이 지켜지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표1>에서 보듯이 한미의 환경치유기준이 다른데 한국의 치유기준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미국이 우리의 환경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 <표1> 한미 환경치유기준

구 분	국방부	주한미군
기준	70년동안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	3~5년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

자료출처 : 국방부(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통위·국방위)", 2018. 8 186쪽)

- 캠프마켓의 오염치유비용을 우리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국회가 절대로 묵과해서 안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소파가 우리 환경법에 대한미국의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오염 원인자가 치유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치유 책임을미국에게 묻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 크다.

#### ② 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것이 국제환경법의 원칙

-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은 1970년대 초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일련의 권고문을 통해 언급된 이래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 16에서 다시 천명되었다. 또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 경관련 국제문서, 조약, 각국의 환경정책 및 환경규정 등에서 환경오염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8)
- 한국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미국의 경우 고체 및 유해폐기물의 처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주요 연방 법률인 '자원보전 및 회복법'(RCRA)과 유해물질의 정화 문제를 규율하는 주요 연방 법률인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등이 이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영토 내 군 기지의 폐쇄·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오염의 정화·치유·복원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위 2개 주요 연방 법률이적용되고 있다.(박기학,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2010. 7. 22. 참조)
- 나토 소파 독일보충협정(54조 A2항)은 주독외국군 및 군속 당국이 독일의 환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보충협정 서명의정서(제63조 8②b)는 주독외국군에 의해법적(독일환경법)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 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평가·치유하는데 소요

<sup>8)</sup> 심영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2호 통권111 호(대한국제법학회), 2008. 8. 192쪽

되는 비용을 주독외국군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는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일방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현재 한미는 반환 대상 미군기지에 대해서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 3. 20.)를 적용하여 한미 공동환경조사를 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여 정화기준(KISE,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키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 측이 자체 비용으로 조치하고 반환하기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기준(KISE) 해당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환경오염치유 책임과 비용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 JEAP는 미국의 한국 환경법 준수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유해성의 판단기준으로 KISE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KISE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의 토지환경보전법이 아닌 주한 미군사령관의 자의적 판단이 기준으로 되고 있다. KISE(인간건강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 한국 측은 70년 동안 10만 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지침에 의거하여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방부 소관 2016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017. 7. 251쪽 참조)
- 미 국방부 지침 4715.8호에 따르면 KISE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수치가 없고 지역사 령관의 판단으로 KISE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즉 KISE의 해당 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없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KISE는 미국의 환경법에서 통용되는 기준과도 크게 다르다. KISE는 미국 환경법인 CERCLA(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와 RCRA(자원보존과 복구법)에도 나와 있다. 이 두 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 미국 환경청의 지침서(해석)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주고 있다. "'위험'(endanger)은 실제 해를 입히거나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급박한'(imminent)은 수 년 동안 그 해가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환경이나 보건에 앞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치라면 긴급한 것에 해당한다. '상당한'(substantial) 위험은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분명한 원인이 있다면 해당된다. 엄청난 위험(risk)일 필요는 없다."(박기학, 위 자료 재인용)고 되어 있다. 이런 미환경청의 지침에 따르면 KISE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정부의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환경법에 따르면 KISE에 대한 주한미군의 해석은 오염치유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대한 좁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한미군이 주장한 '위해성 평가' 방식에 따라 2009~2011년 사이에 7개 반환미군기지의 오 염정도를 평가한 결과 단 1곳(부산 하야리아 기지)만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주한미군은 하야리아 기지 면적의 0.26%인 1,356㎡에 대해서만 오염(위해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KISE 기준으로 확인된, 아주 제한된 면적에 대해서도 치유 비용부담을 거부하였다. 주한미군에게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 받은 뒤 우리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야리아 기지의 18%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4월 대법원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한미소파 회의 내용을 언론과 공중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JEAP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우리 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 것이다.
- 우리의 환경주권이 부정되고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JEAP는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SOFA를 개정해 우리 환경보전법 준수의무가 규정되고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출입 권 및 오염조사권,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 4. 결론 및 제안

#### ① 국회는 내년도 환경오염치유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한미 공동환경조사 결과 심각한 오염수준을 확인하고서도 그 치유비용을 전부 한국이 떠맡은 캠프마켓 사례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앞으로 용산미군기지 등 주한미군한테 반환 받을 기지가 26곳이 더 남아있는 바》, 이들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우리 국민이 몽땅 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20년부터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의 환경오염은 다른 미군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정도가 광범하고 심할 것으로 여겨져 정화비용만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회는 내년도 캠프마켓 등의 환경오염치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 ② 국회는 우리의 환경주권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소파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소파 부속문서인 JEAP를 폐기하고 우리 환경보전법을 미국이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105억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sup>9)</sup> LPP개정 협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른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모두 80곳이다. 이 가운데 2017년 현재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모두 54곳이다. 그런데 54곳 중 25곳은 국내 환경보전법 상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우리 정부가 비용을 들여 정화를 실시하였다. 2018년 현재 24곳의 오염정화에 든 비용만 2,193억 원에 이른다.

#### 전투예비탄약 등 확산탄

#### 1. 2019년 국방예산 중 확산탄 관련예산 현황

<표1> 2019년도 확산탄 예산(안) 현황

No	구분	항목	내용	예산액
		육군 전투예비탄약	2.75다목적분산탄	6,370백만 원
1	전투예비탄약	육군 전투예비탄약	155밀리 DP-ICM BB	86,445백만 원
		육군 전투예비탄약	40밀리이중목적고폭탄	9,443백만 원
2	V OTI A T	육군	DP-ICM BB탄(K310)	57,513백만 원
	K-9자주포 	해병	DP-ICM BB탄(K310)	35,673백만 원
3	230mm급무유도탄(R&D)			20,025백만 원
4	230mm급다련장	육군	유도분산탄	310,211백만 원
5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해군		5,629백만 원
6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해군		17,973백만 원
	549,282백만 원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8. 9.)에서 작성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적의 전차, 장갑차에 대한 타격능력 향상을 통한 무력화.
- ② 북한의 군사위협이 소멸되지 않는 한 확산탄 금지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없음.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확산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비인도적 불법 무기다
-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약으로 대표적인 반인도적인

무기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이다. 이는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 자의 99%가 민간인이며 그 중 36%가 어린이(『Cluster Munition Monitor 2018』, 2018. 8. 13. Cluster Munition Coalition)라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확산탄은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이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 확산탄은 확산탄 금지조약의 발효로 이제 국제적으로 불법화 되었다. 2008년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 금지조약이 채택되고 2010년 8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2018년 8월 14일 현재 총 120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했고, 이 중 103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며,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확산탄을 수입하고 있는 최 대 수입국이지만, 남북한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확산탄금 지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이재승, 2010. 10. 16.)
-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는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 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확산탄 금지 연합'과 그 회원 조직인 PAX는 확산탄 제조 기업인 한국 풍산에 대해, 풍산이 생산하는 미가공 동전 구입 중단을 촉구하는 세계적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노르웨이와 네델란드 왕립 화폐주조청은 "풍산은 국제법상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제조업체"라며 풍산의 미가공 동전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5년 예멘에서 확산탄을 사용한 사우디에 확산탄을 수출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미 의회가 사우디에 확산탄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2016. 6.)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② 확산탄이 없더라도 전쟁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국방부는 전쟁 지속능력 보장을 위해 확산탄의 계속적인 생산과 비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확산탄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탄약이기 때문에 이를 전쟁 수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 확산탄을 전쟁 수단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전쟁수행력은 약화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적의 전차, 장갑차에 대한 타격능력 향상을 통한 무력화"를 위해 확산탄

의 전투예비탄약 비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한은 전차와 장갑차의 전력에서 북한에 비해 훨씬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굳이 확산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방 어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남한의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전차 나 장갑차는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 100개국이 훨씬 넘는 국가들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한 사실이나 2018년 현재 독일과 프 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5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따라 147만 개의 비축 확산탄과 1억 7천 7백만 개 이상의 자폭탄을 폐기 처분한 사실은, 이들 나라가 확산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③ 확산탄은 공격을 위한 불법적인 무기다

- 확산탄은 자위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방어 목적의 무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 침입이나 공격에 효과적인 무기로써 개발되었다. 우리 군이 한국을 방어하는, 즉 유엔헌장에서 인정되는 자위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확산탄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거의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목적의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무기체계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함대지순항미사일, 잠대지미사일과 더불어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전력의 하나다. 230mm 다련장(천무)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밀유도확산탄(CBU105) 등은 대량응징보복체계 (KMPR) 구축을 위한 핵심무기체계이다.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비축, 생산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에 위배되며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발동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법이다. 또 이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체제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 정면으로 반한다.

# ④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량을 미국이 인가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 확산탄이 국제인도법 및 국제 조약으로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이를 계속 전투예 비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여서가 아니라 미국이 확산탄의 전투예비탄약 비축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 1974년 체결된 한미 재래식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이른바 SALS-K)는 그 2항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20개 사단 규모의 병력에 대한 미국이 인가한 기준의 45일분을 확보하는 데, 한국소유 재고의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 소유의 재래식 탄약을 한국 내에 저장

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부대구조와 미국의 인가된 보급률(US approved supply rates)의 수정사항을 적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한국군의 전투예비 부족량을 검토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의 각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의 종류와 비축량을 인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반인도적인 대인지뢰나 확산탄을 계속 비축하고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국이 대인지뢰 금지조약이나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전투예비탄약에 대한 미국의 인가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SALS-K는 주한미군(제7사단)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한미 육군 소유 탄약을 한국이 대신 저장·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미국 내에서 남아도는 수명이 다한 노후탄약을 한국으로 옮겨 보관하기 위해 체결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이제 이 불평등한 SALS-K 합의각서는 폐기되어야 하며 한국은 확산탄금 지조약과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전쟁예비탄약의 사전 비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때다

- 지금까지 전쟁예비탄약의 비축은 북한과의 전면전(북한 공격 및 점령)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합의하였고 이제 이 대책을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서해 해상과 지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였으며 지상 군사분계선 상공에서도 비행금지에 들어갔다.
- 나아가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나 근원적으로나 전쟁위험을 제거한다는데도 합의하였다.
- 이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장기의 전쟁예비탄약 비축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2019년 전투 예비탄 중 육군 전투예비탄약 2.75다목적분산탄, 155밀리 DP-ICM BB, 40밀리 이중목적고폭탄 예산 1022억 5천 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육군과 해군의 K-9자주포의 DP-ICM BB탄, 230mm급무유도탄, 203mm급다련장 유도분산탄,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수직형) 등의 예산을 삭감한다. 기 보유한 확산탄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확산탄 관련 5,492억 8,2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163)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 (2533-307)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 업청	계속	498,674	′18~′22년	119,025	119,025

## 2.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사업목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 탄도탄을 직격 요격(Hit-To-Kill)할 수 있는 PAC-3 유도탄(MSE탄)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

< \*\* (19년 이후) 기대효과>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도입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 방어 자산에 대한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 대응능력 향상

####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이 잘못됨

- 방위사업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하지만 2018년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밝히고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 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 또한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 이는 핵대결이 고조되어 PAC-3 유도탄 소요가 결정되던 2013년이나 2016년 소요가 수정되어 전력화 시기가 조정되던 2016년은 물론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작년과 사업추진 기본 전략이 의결된 2018년 2월과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 더구나 합참은 처음 PAC-3에 대해 소요를 결정하여 2014년에 소요를 수정하며 "PAC-3 유도탄 중 일부를 우선 확보하고 잔여 수량은 안보환경과 국가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 따라서 PAC-3 유도탄 추가도입의 정책적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③항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①의 5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② 한반도에서는 종말 하층방어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므로 사업 목적 달성 불가능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3~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 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는 종심이 매우 짧아 PAC-3 등의 요격체계에 의한 종말 하충단계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의 국방연 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2010~2012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PAC-3 MSE 요격미사일 추가 도입 사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다.

# ③ 요격 능력 미지수

- 록히드 마틴과 미육군은 2016년 7월 PAC-3 MSE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표적기를 성공적으로 탐지, 추적, 교전 요격하는 성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시험발사에서 사용된 표적은 전술항공기로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요격실험이 아니었다. 미국방부 시험평가국도 2017년 연례보고서에서 "패트리어트는 2000년 이래, 적 미사일 탄두를 가상한 모의 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실전적) 비행시험을 진행한 적이 없다. (Patriot has not had a flight test against a TBM target with a threat-representative payload since 2000, which limits the ability to assess Patriot lethality against TBMs)"라고 밝히면서육군에 대해서 "장래의 전술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은 적의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한 패트리어트의 치명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적 미사일 탄두 모형을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Conduct future TBM flight tests with targets having threat representative payloads to adequately assess Patriot lethality against TBMs)"라고 주문하고 있다.

# ④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가능성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 국방부는 PAC-3 유도탄 2차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4,986억 7,400만 원으로 제출하였지만, 미 국방부 국방협력국(DSCA)은 2018년 9월 13일 한국에 PAC-3 MSE 요격미사일 64기를 5억 100만 달러(한화 약 5, 710억 원)에 판매승인 되었음을 공고했다. 이는 국방부가 제출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규모로 전체 사업비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PAC-3 MSE 미사일 64기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 국방부의 주장대로 PAC-3 MSE 미사일 도입사업의 목적을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로 상정한다면, 주요시설을 군사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 전략 지역 30 곳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대는 27~36기로 추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을 27~36개 지역—으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최소 2,000발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이에대한 비용은 PAC-3 MSE 미사일 비용만 최소 18조 원 이상(1발 당 약 90억 원), 발사대,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추정가 최소 6조 원(PAC-2 도입가 적용 시, PAC-3는 2배 이상)등 24조 원 이상으로 1년간 방위력 증강 사업비 10조 원의 2.5배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 그동안 군은 패트리어트 유도탄 도입에만 PAC-2 개량사업 1조 3,737억 8,200만 원, PAC-3 GEMT 탄 도입사업 2,403억 원, 이번 PAC-3 유도탄 2차 사업 4,986억 7,400만 원 등 약 2조 1,127억 5,6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PAC-3와 비슷한 성능의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타당성 재조사) ①항의 5번 항목 "중복 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타당성 재조사) ①항의 3번 항목도 총사업비가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자산취득비에서만 최소 700억 원 이상 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①항의 3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③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⑤ 비용 대비 효과 매우 낮아

- PAC-3는 방어 범위가 30km 미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다. 이는 PAC-3 도입 등 종말 하층방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은 불과 몇몇 주요 정부 기관

이나 군사 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민간인들이나 핵발전소를 포함한 민간 시설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요격고도와 방어범위가 기존에 비 해 향상된 PAC-3 MSE를 도입해도 마찬가지다.

## ⑥ FMS 방식의 구매에 따른 불이익 감수

- 1발당 약 90억 원인 PAC-3 MSE 도입가는 미 국방부의 PAC-3 MSE 도입가(2019년 국방예산 안, 1발당 53.7억 원)에 비해 약 1.7배나 비싸다.
- 게다가 미 국방부 국방협력국은 PAC-3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충교역도 없음을 못 박고 있어 기술 이전 등의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 FMS 방식의 구매는 단지 PAC-3 MSE 탄 구입의 경우만이 아니라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다른 모든 미국 무기 구매의 경우에도 가격, 납기 기한,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시 지체보상금 부과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전 PAC-3 구입 과정에서도 한미 간에 초입금 규모와 대금 지불 일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계약조건의 굴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매우 낮은 PAC-3 MSE탄 도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사업 목적이 사라졌고, 작전적 효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고, FMS 방식의 도입으로 국익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PAC3 유도탄 2차 도입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1,190억 2500만 원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164)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2533-308)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283,000	′14~′21년	278,642	278,642

# 2.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사업목적> 적 탄도유도탄 직접 요격(Hit-To-Kill)을 위해 PAC-3탄 구매 및 기 도입된 패트리어트 주 장비(레이더, 통제소, 발사대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 <향후(2019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전력 지속 증강 상황 하에 핵탄두 파괴가 가능한 직격요격 능력 구비로 탄도유도탄 방어능력 신장
- KAMD 핵심전력 정상 사업추진으로 KAMD 적기 구축 가능 및 한미연합작전 능력 향상

####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이 잘못됨

- 방위사업청은 북한 핵탄두에 대한 직격 요격을 통한 파괴를 위해 PAC-3 탄 구매 및 기존 패트리어트의 레이더와 통제소, 발사대 등의 성능을 개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다.
- 하지만 2018년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밝히고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 또한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 따라서 한반도 핵대결이 고조되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 소요가 결정되었던 2013년과 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과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의결된 2014년과 지금은 한반도 안보상황 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은 애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의 사업 목적으로 "기존 독일 도입 장비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향후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지역 방공 및 탄도탄 방어 전력으로 배치·운용할 예정"(방위사업청,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본))으로 설정했었다. 이제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조건에서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방어"라는 애초 사업 목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러기에 방위사업청도 2019년 예산안의 사업 목적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방어능력 향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으로 KAMD 적기구축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지만, KAMD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한 사업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로 사업의 목적성이 상실되었기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의 기대효과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패트리어트 개량사업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③항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①의 5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② 종말 하층방어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므로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3~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 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는 종심이 매우 짧아 PAC-3 등의 요격체계에 의한 종말 하층단계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공동 연구(2010~2012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북의 핵・생화학 등 다양한 위협을 무력화 한다는 사업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하며 패트리어트 개량 사업 및 PAC-3 도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다.

# ③ PAC-2, PAC-3의 요격 능력 미지수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장관 코언은 걸프전(1991년)에서 PAC-2의 요격 성공률이 44발발사에 0%였다고 밝힌 바 있다.('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2010. 11.) PAC-2 탄두의 근접신관 개량과 유도 레이더와 센서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라크전(2003년)에서도, 미 육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격율은 40%를 밑돌았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걸프전 때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속도도 늦어

(Kinetic Energy Kill for Ballistic Missile Defence: A Status Overview, CRS Report, 2007. 1. 5.)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격율이 40% 미만이었다는 것은 PAC-2, PAC-3의 성능 개량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 육군은 걸프전 때 PAC-2 요격율이 70% 이상이었다고 터무니없이 부풀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PAC-3 요격율이 40%라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 미국방부 시험평가국도 2017년 연례보고서에서 "패트리어트는 2000년 이후 적 미사일 탄두 와 같은 성능의 모의탄두(threat-representative payload)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비행시험을 진행한 적이 없다. "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핵 또는 WMD 탄두가 탑재된 것을 가정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직격 요격하는 실전적 환경에서의 비행시험을 2000년 이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실전에서의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육군은 탄도미사일에 대한패트리어트의 치명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적 미사일 탄두와 같은 성능의 모의탄두 (threat-representative payload) 탑재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실전적) 비행시험을 해야한다. "고 주문하고 있다.

## ③ 방어지역 매우 협소

- PAC-3는 요격고도가 최대 20km, 방어 범위가 30Km 미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다. 이는 PAC-3 도입 등 종말 하층방어에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방어할수 있는 지역은 불과 몇몇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군사 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민간인들이나 핵발전소를 포함한 민간시설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요격 고도가 40km로 향상됐다는 최신형 PAC-3 MSE를 도입해도 마찬가지다.

#### ④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 미 국방부 국방협력국(DSCA)은 2014년 11월 5일, 한국에 약 14억 500만 달러(약 1조 5,649 억 원)에 이르는 PAC-3 미사일 136기와 관련 장비와 부품, 군수 지원의 FMS(대외군사판 매)를 승인했다. 한국은 PAC-3 미사일을 1기당 약 25억 원에 도입한 셈이다.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요 전략 지역 30 곳—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산되는 바,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을 27~36개 지역으로 가정—으로 한정하면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최소 2,000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 이 비용은 PAC-3 탄 비용만 최소 5조 원 이상(1기 당 약 25억원), 발사대,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추정가 최소 6조 원(PAC-2 도입가 적용 시, PAC-3는 2배 이상) 등 11조 원 이상으로 1년간 방위력 개선비 13.5조 원(2018년 기준)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으로, 우리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 한편, 군은 PAC-2 개량사업 1조 3,737억 8,200만 원, PAC-3 GEMT 탄 도입사업 2,403억 원, PAC-3 유도탄 2차 사업 4,986억 7,400만 원 등 패트리어트 유도탄 도입에만 약 2조 1,127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PAC-3와 비슷한 성능의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타당성 재조사) ①항의 5번 항목 "중복 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한편, 군은 애초 총사업비(1조 2,829억 6,700만 원)에서 9.25%나 증액된 총사업비 1조 4,012억 1,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타당성 재조사) ① 항의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총사업비 변경 20%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총사업비가 무려 1,182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사업이니만큼 국가재정법 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③항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사업 목적이 상실되어 KAMD의 정책적 필요성이 사라지고, 작전적 효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고,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2,786억 4,2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158) 철매-Ⅱ 성능 개량 (2532-339)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신규	977,100	′17~′22년	136,663	136,663

#### 2.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향후(19년도 이후) 기대효과>**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양산 완료시 대 항공기 요격 능력 보강

#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

####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이 잘못됨

-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은 사거리 40km급 중거리/중고도 방공 미사일 천궁(철매-II)을 개량 하여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직격 파괴 방식으로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KAMID 구축의 핵심무기체계 중 하나로 철매-II를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2018년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밝히고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 또한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사업 목적은 소실되었기에 철매-II 성능개량 사업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 ② 종말 하층방어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므로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 국방부는 철매-II 양산 관련 입장(2018. 8. 21.)에서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II 성능개량이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북한의 스커드 B, C, D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3~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 실시한 연구(2010~2012년)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방어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철매-Ⅱ 개량 사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다.

#### ③ 협소한 철매-Ⅱ 방어지역

- 철매-Ⅱ의 성능 개량에 성공하더라도 철매-Ⅱ는 방어 범위가 30Km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철매-Ⅱ를 도입하자면 이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곳은 몇몇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군사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핵발전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민간시설과 민간인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④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 방위사업청은 7개 포대 200여발 양산에 4,390억 원에 계약하였다. 이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 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요 전략, 작전 지역 30 군데─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정되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을 27~36개 지역─로 한정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20기의 발사대와 약 3,000발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30개 포대를 모두 철매-Ⅱ로 충당할 때 소요 비용은 1조 8,8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다.

## ⑤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

-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은 PAC-2 도입 사업,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 사업, PAC-3 탄 도입 사업, PAC-3 MSE 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과 중복된다. 이들 중복 사업비용으로만 이미 2조 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최소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

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국방부는 철매-II 양산 관련 입장(2018. 8. 21)에서 "양산계획을 조정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단가상승이 예상 ···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다지만 불요불급한 이중 삼중의 중복사업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사업목적성이 소실되고,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낮으며,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요소가 큰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을 전면 철회시켜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1,366억 6,300만 원 전액 삭감

# (134)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R&D) (2531-314)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0,971,93	15~23년	54,974	54,974

# 2.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사업목적> 장거리 지역 방공과 탄도유도탄 방어능력 보강을 위한 독자적 요격체계를 국립 과학연구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향후(2019년도 이후) 기대효과>** L-SAM 개발 완료시 부족한 지대공 방어능력 향상,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타당성 조사 결과 요지> (2014년, 한국 국방연구원) 탐색 개발 완료 후 다층방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대 요격고도 ROC 변경 검토

#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이 잘못됨

-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역 방공과 탄도유도탄 방어능력 보강을 위한 독자적 요격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L-SAM 완료 시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방위 사업청의 주장에 따르면 L-SAM 개발의 목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KAMD 구축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2018년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밝히고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였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 또한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 이는 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교착되어 L-SAM 소요가 확정되던 2010년이나 핵대결이 고조되며 L-SAM 사업타당성이 조사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승인되던 2014년과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북의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L-SAM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② 종말 상충·고고도 MD 체계를 개발·도입하지 않겠다던 대 국민 약속 파기

- 국방부는 그 동안 누누이 종말 상층·고고도 MD 체계를 개발·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언론이 한국의 미국 MD 가입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도 국방부는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는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2013. 5. 8.)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이미 사드 부지를 조사하고 다닐 때조차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연합뉴스, 2014. 5. 29.)며 상층방어체계의 도입을 부정했었다.
- 국방부의 설명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L-SAM의 요격고도는 40~60km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평통사가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2015. 10.)한 결과 L-SAM의 요격 고도를 40~150Km로 확인해 준 바 있다.
- 이미 국방연구원은 L-SAM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2014년) 결과에서 탐색 개발 완료 후 최대 요격고도 ROC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국방부는 L-SAM의 요격고도를 100km이상 외대기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L-SAM을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개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2018년 4월 최대 비행고도를 확인하기 위한 발사 시험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연기되었다는 언론 보도에서 "L-SAM 고도가 100km 넘게 치솟는다." (MBN, 10. 16.)는 것을 보면 L-SAM은 100km 이상의 외대기권까지 요격 가능한 상층방어 요격 무기체계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제 L-SAM 사업을 통해 종말 상층·고고도, 내·외기권 요격체계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상층방어체계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국방부의 대 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 ③ 상충 방어체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 없어

- L-SAM은 종말 상층방어체계로, 상층방어체계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L-SAM은 요격 고도 40~150Km의 종말 중·고고도 외, 내 대기권 요격 체계로 노동미사일과 같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L-SAM의 주 요격 대상은 북한 보유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는 방어종심이 지극히 짧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상층(중·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도 낮아 L-SAM의 요격 고도 아래에서 형성되거나 요격 고도 위에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요격이 가능한 고도 아래로 하강해 버림으로써 요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종말 상층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종말 상층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할 목적에서 일본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이 남한 공격에 보다 효용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가 없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노동미사일의 탄두가 기만체나 추진체의 파편과 함께 날아오게 되면 탄두와 기만체 또는 파편을 식별할수 없어 요격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드 체계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 갖게되는 난제를 LSAM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만 LSAM의 요격고도가 40~60km일경우에는 기만체나 추진체 파편으로부터 탄두를 구별해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탄두가 낙하하면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는 등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아 요격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조정하여 40~60km의 요격 고도를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을 함으로써 LSAM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에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상충·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LSAM 개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④ 다충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업 목표는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

- 다층방어 개념은 한반도와 같이 종심이 짧은 지역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허구적인 개념이다. 애초 다층방어체계는 적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하층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고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고고도나 중고도에서 요격하고, 다시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의 다층방어체계는 양자 사이의 요격고도와 시간차가 매우 짧아 성립하기 어렵다. 종말 고고도나 상층에서 요격 실패를 확인한후 하층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할 만한 시간 여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국방부

가 종말단계 상층체계의 요격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층체계와 거의 동시에 하층체계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를 다층방어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군은 북한 이 보유한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600~800기의 최소 2배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 또한 L-SAM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요격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요격 고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처럼 수도권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다층방어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과 남한군의 70% 이상, 그리고 정부 기관과 기업체 등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다층방어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층방어를 위한 L-SAM 개발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 ⑤ 중국 등 주변국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잘못된 사업 목적

- 국방부가 L-SAM을 종말 고고도(80km 이상)와 외대기권(100km 이상) 요격이 가능한 체계로 개발하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이라고 보여져왔다. 이는 한국을 겨냥한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 곧 종말 고고도 또는 종말 상층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동북아 유사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성주 사드 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 기지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그런데 한국이 L-SAM 개발과 배치로 대중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곧 한중 적대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군사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미군 사드 배치로 현실화되고 있다.
- 이렇듯 L-SAM 사업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편승하려는 잘못된 국가안보전략의 파생 사업이다. 결국 L-SAM 사업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미 MD 가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 대중 적대적 관계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L-SAM 개발은 필요 없게 된다.

#### ⑥ 대미 군사적 예속 확대 심화

-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일 MD 체제에 참여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MD 전초기지로 전략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L-SAM의 개발을 넘어서 대중 MD 작전에서 보다 큰 성능을 발휘할 사드,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까지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 또한 현실로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MD 정보, 요격작전 등에서 월등히 뛰어난 미국에 한국군은 전면 예속될 것이며, 작전통제권 환수도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 ⑦ 사업 중단 가능성

- L-SAM의 요격 고도가 미국의 MD 체계인 사드(THAAD)와 비슷하게 40~150km로 높아지게 되면 개발 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개발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개발 성공 가능성도 더욱 의문시될 것이다. 그 사이 미국 사드(THAAD) 도입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송영무 전 장관이 개발에 성공한 M-SAM 의 양산사업에 대해 한차례 중단지시를 내렸던 것처럼 L-SAM 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이미 합참은 100km 이상 외기권 요격용인 SM-3 미사일의 소요를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L-SAM 연구개발 사업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연구, 개발 비용은 순전히 낭비로 되는 것이다.

#### ⑧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 가능성 커

- 국방부는 철매-II 성능개량과 L-SAM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 과 PAC-3탄, PAC-3 MSE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PAC-2 도입 비용의 상당 부분 과 철매-II 개발 비용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이미 낭비되었다. L-SAM 개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L-SAM을 개발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낮거나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L-SAM 개발과 생산비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중복 투자로 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이렇듯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효용성이 없으며, 대중 적대관계를 전제한 잘못된 사업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폐기되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타당성 재조사) ①항의 5번 항목은 중복 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 5. 삭감 요구액

- 549억 7,400만 원 전액 삭감

# (113)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2432-308)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6,052,100	12~24	670,114	670,114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 ① 군이 운용중인 현용헬기(UH-1H, 500MD 기본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으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확보하는 사업
- ②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향상된 주/야간 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기동헬기 확보 필요
- ③ 최초 국산헬기 양산을 통해 국내 항공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우려되어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 방부 주장의 허구성

- 남한의 헬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2016년 국방백서를 보면 남한은 690여 대(육해공 합쳐)를 보유해, 불과 290여 대를 보유한 북한에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밀리터리 밸런스(2016년)에 따르면 국방부가 노후화되어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UH-1H 및 500MD 헬리콥터는 모두 152대로, 이를 제외하고서도 남한 헬리콥터는 538대로 북한의 290여대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압도한다. 즉 국방부의 노후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다.
- 더욱이 남한이 보유한 UH-60, M/CH-47, 수리온 등 340여 대의 다목적 헬기는 북한이 보유한 Mi 2/4/8/17/26과 500D 등 286여 대의 소형 다목적/지원(기동, 수송, 탐색·구조) 헬기보다 수송 능력과 항속거리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전력공백

#### 우려는 근거가 없다.

78	북	<u></u> 한	한국	
구분	Mi-2	Mi-4	UH-60	M/CH-47
수송능력	800kg/8명	1,740kg/11명	3,630kg/11명	12,000kg/40명
항속거리	170km	250km	600km	1,207km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평가 보고서』,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 일반적으로 헬기나 전투기 등 항공기의 노후화는 사용 연한이 아닌 운용시간으로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헬기의 기준수명과 운용수명을 넘기더라도 실제 운용을 적절히 조절해 헬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도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 공백 문제도 크지 않다."('KMH 개발 불구 노후 헬기 문제 심각'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4. 1. 14.)고 밝힌 바도 있다.
- 국방부가 도태 대상으로 제기하는 500MD는 운용시간이 약 2만 시간이지만, 우리 군의 500MD 운용시간은 평균 5,000~7,000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방산 현장을 가다 ①, '창문도 계기판도 없는 대한항공 500MD 무인헬기…"새 먹거리로 주목"', 조선 비즈, 2017. 4. 3.)
- UH-1H의 제조사인 벨(BELL)시는 UH-1H 헬기 기체수명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육군 항공기 정비단 민영화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향」, 항공우주정책연구원, 2012. 1. 10.)

#### ②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헬기의 작전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 기본적으로 헬기는 공격용 헬기든 다목적/지원 헬기든 자체 방호력이 취약하여 상대방의 지대공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악지형이 80%에 달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상당한 지대공 요격 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 군 헬기의 생존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2001년에 미국의 보잉사가 한반도에서 공격 헬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워게임(war game)에서 아파치는 100% 격추당했다.

#### ③ 계속되는 추락사고와 성능결함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혈세낭비만 초래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헬기 개발은 첨단 과학기 술의 총화로서 수리온 개발과 생산을 통해 약 12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5만여 명의 일 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위 주장은 수리온의 끊임없이 성능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핵심부품

의 해외의존 문제 등을 외면한 과장된 주장이다. 2015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리온의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서'에는 Batch 0~4 부품 135개가 체계 개발 완료 시점인 2012년 6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개발 완료하게 돼 있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소극적인 사업관리 및 국제공동개발의 국내외 참여업체 간 의사소통 부재 및 상호협력 미비로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은 실패했고, 이로 인해 156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 미국과의 기술이전 협의도 없이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당해 18억여 원의 소프트웨어 설계비도 낭비되었다.

- 감사원은 2017년 7월 16일, '한국형 기동헬기 비행 안전성 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위 사업청이 수리온의 체계 결빙 성능을 보완하지 않은 채 납품을 재개함으로써 "체계 결빙 규격 적용이 부당하게 유예되어 해당 기간 지체상금(약 4571억 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개선비용(약 207억 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엔진 등 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 태만으로 4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엔진 교체로 24억 원, 수리온 자체 불용처리에 따른 194억 원 등 손실 발생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2018년 5월, 제주소방본부에 수리온을 인도하며 관공서들의 국산 헬기도입에 속도가 나는 듯 보였지만, 수리온의 관용헬기 공급 계획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마린온 추락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됨에 따라 수리온 구매를 꺼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부터 수리온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직 성사된 곳이 없다. 2017년 한 국가와 수리온 수출계약 체결이 눈앞까지 갔으나 방산비리 수사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수출이 가시화됐으나 올해 7월 마린온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또다시 멀어졌다.

# ④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지금까지 수리온은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7월에 수리온 헬기의 파생형이라 할수 있는 마린온 헬기가 추락하여 5명의 해병대 장병이 생명을 잃었다. 감사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능결함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2016년 3월, 수리온의 체계 결빙 성능시험 결과 엔진공기흡입구에 엔진 유입 허용량을 초과 하는 얼음이 발생하는 등 수리온 감항인증기준 결빙과 관련한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자 방위사업청은 2016년 8월, 수리온의 납품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방위사업

청은 이 결빙 현상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약속만 믿고 납품을 다시 재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군 당국을 앞장서서 설득했고, 특히 결빙 성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안전 관련사항'임에도 KAI가 2016년 12월 규격변경을 제안하자 '일반사항'으로 변경해 주었다.

- 또한 방위사업청은 당초 수리온의 감항 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의 감항인증기준인 'FAR 29'(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기술 기준)를 기반으로 한 '수리온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일정과 비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일부 항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완화했다. 감항인증에서 제외된 항목이 바로 수리온의 기술적 결함으로 꼽히고 있는 체계 결빙과 엔진 형식이다.
-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가 활주로 이륙 도중,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기체에 설치된 전선 절단기의 충돌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설계변경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용자 교범'만 수정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 2018년 7월, 수리온의 파생형인 마린온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는 7월 21일,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로터 마스터' 부품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된 로터 마스터와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친 다른 로터 마스터 3개에서도 같은 균열이 식별됐으며, 이중 2개는 육군 기동헬기인 수리온에 장착됐다고 밝혔다.
- 더욱이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여전히 감사원의 지적사항 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 이행관리 현황」에따르면 2017년 7월,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의 기관에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27건에 대해 처분(조치)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1년이 지난 2018년 7월 시점까지도 27건 중 9건(33%)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목은 △한국형 기동헬기의 활주이륙 성능을 유지하고,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인한 엔진 정지 현상방지 대책마련 △결빙환경에서 운용능력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마련 방안, △수리온이 결빙환경에서 운용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데 따른 안전관리대책마련 등으로 수리온 헬기의 운항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한국형 기동헬기의 성능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본적 해결 없이 한국형 기동헬기를 양산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와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편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 <수리온 운용유지상 주요 문제점>

		내용
문제점	발생 횟수	원인 및 진행 경과
방빙 장치 관련 엔진 결함	3회	• 방빙 장치 고열로 인한 공기흡입 유도깃 레버가 고착 - 엔진 교체(2EA), 4호기 추락으로 대파
중앙 동체 프레임 크랙 발생	4회	• 진동 흡수기 장착을 위해 보강한 더불러 끝단 장착부에서 응력 집 중과 반복된 하중으로 하부 프레임에 균열 발생 - 비행 안정성 및 원인 검토 후 추가 후속조치 예정
윈드 실드 파손	5회	• 이착륙 또는 상공 비행 시 윈드 실드 파손
주회전 날개와 전선절단기 충돌		
기체 내부 빗물 유입	모든 호기 공통	• 동체 결합 불량 또는 외부 환경 노출에 따른 실런트 마모 등 추정 - 생산 단계 실링 작업 보완 및 검사 강화 추진 중
유압변환기 작동 불량 및 타이어 파손	3회	• 해외업체(이탈리아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유압변환기 조립 공 정 불량으로 추정 - 조립 검사 공정 강화, 수락시험절차 강화 등
착륙 보조장치 조기 마모	11회	• 착륙 보조장치 지면 마찰로 조기 마모 발생 - 마모방지패드 장착 예정
매인 컴퓨터 부팅 실패	9회	• 컴퓨터 내부 펌웨어(Firmware) 오류 - 부팅 시 내부 타이밍(Timing)이 최소 100ms 필요하나 1ms로 설정 됨
화물 인양 고리 작동 시 기체 간섭	27회	• 화물 인양 고리 사용 시 교범에 명시된 운용범위(30°)를 초과하여 기체 간섭 발생
충돌 방지등 작동 불량	24회	• 충돌 방지등 미점등 및 간헐적 미점등, 충돌 방지등 점멸 불가능 - 전원공급기 회로카드 재설계 필요
연료량 표시장치 에러코드 시현	4회	• 개발 EMI/EMC 시험 시 신호처리장치(SCU) 및 연료량 측정막대 (Probe)간 알루미늄 호일을 적용하여 부적합한 EMI/EMC 시험 실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 감사원, 2016. 10.)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수리온 사업은 남한의 헬기 전력을 감안할 때 각종 성능 결함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조종 사의 안전 문제 등을 도외시 한 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 아니다.
- 성능 결함과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한 국형 헬기 도입 사업은 성능 결함이 완전히 보완되기 전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2019년 한국형 기동헬기 예산 6,701억 1,4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112) 상륙기동헬기 (2432-307)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961,510	′16 ~ ′23년	158,576	158,576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 ① 한국형기동헬기를 기반으로 상륙기동헬기로 개조 개발하여 해병대 입체 고속 상륙작전능 력 확보를 위한 전력으로 운용
- ② 상륙기동헬기의 국내양산 추진으로 해상운용기술의 해외 의존 탈피와 막대한 해외구매 비용 절감
- ③ 기술파급 효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부 창출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사업목적의 불법부당성

- 상륙기동헬기(마린온)는 최대수평속도 279 km/h (151 kts), 최대항속거리는 775 km로서 해병대의 입체 고속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이다.
- 상륙작전이란 "함정, 주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과 상륙군이 해양을 통하여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04. 12.)이라는 사전적 설명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공격작전이다.
- 남북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과 단계적 군축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며 한반 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시분야합의서에 위 배된다.

# ② 성능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에서 보듯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수출은 물론, 국내 판매 역시 불투명하다.

- 방위사업청은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로써 "경제적으로 수출사업화,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고용증대 등 국민 경제적이익 상승효과 발생"(방위사업청, 『2019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902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는 희망사항일 뿐이며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형기동헬기, 상륙기 동헬기 양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대형기동헬기(2차) 사업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CH-47D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9년도 예산으로 6억 9,800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 상륙기동헬기의 수출사업화도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상륙기동헬기는 한국형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개조, 개발한 것인데 한국형 기동헬기가 심각한 안전문제를 안고 있어 수출 여부가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부터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한 건도 성사하지 못했다. 2017년, 한 국가와 수리온 수출계약 체결이 눈앞까지 갔으나 방산비리 수사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수출이 가시화됐으나 2018년 7월,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수출의 길은 또다시 멀어졌다.

# ③ 추락사고의 진상과 성능결함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륙기동헬기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18년 7월 17일, 정비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가 추락했다. 이로 인하여 탑승한 6명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는 2018년 9월 21일,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메인로터(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 마스터'라는 부품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상륙기동헬기는 한국형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조한 것이다. 수리온은 지난 2015년 12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결함과 사고로 안전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감사원도 2017년 7월, 수리온이 결빙성능과 낙뢰보호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력화된 점을 문제 삼아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을 수사의뢰하기까지 했다.

- 수리온의 핵심 결함은 심한 기체 진동으로 알려져 있다. 기체 진동이 심해 윈드 실드(앞 유리)가 자주 파손되고, 프레임(뼈대)에 금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마린온 사고 기체도 진동이 심해 여러 차례 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고 당시에도 헬기 진동수치가 0.55로 헬기 이륙제한 수치인 0.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족 박 모씨는 "당시 수치(IPS)가 0.55였다. (사고) 중간조사결과 설명회 때 들었다."며 10월 15일, 해병대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 또한 한국형기동헬기를 상륙기동헬기로 개조하려면 먼 바다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보조연료 탱크를 달아 체공 시간을 늘리고, 헬기 회전날개를 접도록 해 공간이 좁은 상륙함이나 구 축함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날개 4개 중 1개만 제외하고 모두 접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조시간에 소요된 기간은 31개월로 시험평가만 3년 동안 진행하는 선진국 개발 과정 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심층취재]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실수인가 결함인가 2018. 8. 17. 월간 중앙) 이 같이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추락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상륙기동헬기 사업은 그 목적 자체가 대북 공세적인 작전을 위한 것이며 평화시대에 정면 으로 역행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 추락사고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입체 고속기동작전의 무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해병대의 자군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5. 삭감 요구액

- 1,585억 7,6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129) 대형기동헬기 2차 (2433-302)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51,268	′14 ~ ′20년	698	698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① <사업목적> 육군의 대규모 공중강습작전 및 공군의 공중수송능력 보강을 위한 주한미군 잉여장비 대형기동헬기(CH-47D)를 FMS로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 공중강습 임무수행을 위한 대량 인원/장비 수송용 헬기 확보로 육군 전력 보강
- 전시 전술공수 및 평시 정기공수용 헬기 확보로 공군 전력 보강 등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사업 목적의 불법성

-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하려는 CH-47D는 완전 무장병력 33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530km로서 육군의 대규모 공중강습작전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이다. 공중강습작전이란 "강습부대가 지상군 지휘관이나 공중기동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회전익항공기 자산의 기동성과 가용한 모든 화력을 이용하면서 공중으로 기동하여 적과 전투를하거나, 주요 지리적 요충지를 탈취, 점령하기 위한 작전"(『군사용어사전』, 양서각)을 말한다. 공중강습작전은 한마디로 북한과의 전면전 때 헬기를 이용하여 북한 지역 깊숙이 침입하여 북한 지휘부나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이다.10)

<sup>10) &</sup>quot;공중강습작전은 유사시 항공기로 적 후방 지역에 특수부대를 포함한 지상 병력을 침투시키는 것으로, 지휘 부와 핵심시설을 파괴하거나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지상전의 승리를 끌어내는 중요

- 공중강습작전 수행을 위한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 체계의 도입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평양을 지키는 연대 규모의 북한 기갑부대를 포함한 수도방어집단군의 존재와 촘촘한 방공 망을 고려할 때 대량응징보복 및 공중강습작전의 무모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 대북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는 공중강습작전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에 위배된다.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휘부와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 공중강습작선을 수행하기 위해 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 임을 선언하면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에 위배된다.

#### ② 미군 노후 장비 도입의 굴욕성과 예산낭비

-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2012년 7월, CH-47D 판매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은 도태 장비를 한국에 팔아넘기려는 의도였다. 이 CH-47D 기동헬기는 평균 수명이 50년이 다 되어 도태 직전의 헬기였기 때문이다.
- 미국이 고유 부품 판매가 2018년 9월부터 중단된다는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이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의 판매 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용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미국의 고유 부품 판매 중단 통보는 부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부품 조달도 의심스러운 노후 헬기를 한국 육군이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육군의 자군 중심주의가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육군은 헬기를 도입함으로써 예산과 몸집을 늘리고 공중작전에서도 독자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육군 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공중강습작전은 육군이 경쟁군인 공군에 대한 자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라 할 수 있다.
- 수명이 거의 다하고 부품조달이 불투명하여 1,51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혈세의 낭비 가 우려되는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③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로 사업의 근거가 없어졌다

- 국방부는 북하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다는 명분하에서 3축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

한 작전"(연합뉴스 2016, 11, 8)

며 육군 또한 대규모 공중강습작전을 수행할 부대를 창설하고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는 등으로 여기에 발을 맞춰왔다. 육군은 2017년 12월 1일, 13 특임여단을 개편했다. 특전사 내 1개 여단에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1,000명 규모로 출범했다.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은 이여단의 평양 침투작전을 위한 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형 3축 체계는 Kill Chain, KAMD, KMPR 세 가지 체계를 뜻한다. 이 중 대량응정보 복(KMPR)의 핵심 작전의 하나가 입체기동작전이다. 특임여단은 바로 이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부대다.
-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3축 체계 구축은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 국방부는 여전히 3축 체계 구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6.12 북미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으며 재정 낭비일 뿐이다.
- 박한기 합참의장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 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이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은 미군의 처치 곤란한 무기를 육군이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작 전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도입하는 사업으로 백해무익하다.
-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은 그 목적 자체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평화시대 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으며 동시에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대형기동헬기 2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군의 경쟁적인 예산확보 경쟁을 막고 아울러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촉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5. 삭감 요구액

- 6억 9,8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127) F-35A (2433-300)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7,707,564	2012~2022	1,556,150	1,556,150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사업목적> 고성능전투기 F-35A를 국외(FMS)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F-35A 도입 목적의 불법성

- F-35A를 도입하는 것은 성능 차원에서 보면 적 진영에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기능과 뛰어난 공대지 공격능력, 1,000km에 달하는 작전반경 때문이다. F-35A는 JDAM유도 폭탄을 비롯하여 2,000lbs급(909kg) 폭탄까지 장착가능하며 전투작전반경은 1,082km, 최대 항속거리는 2,200km에 달한다. 이런 스텔스기능과 작전반경, 상당한 폭격능력으로 볼 때 F-35A는 한국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선제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우리 군이 F-35A를 도입한 것은 그 스텔스 기능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하면 은밀히 침투해 선제공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3축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F-35A는 바로 이 3축 체계에서 핵심적인 무기체계로서 기능한다.
- 그러나 대북 선제공격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도 위배된다. 또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F-35A 도입은 남 북이 상호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이를 위한 군사적 신뢰조치 및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또 F-35A 도입은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각각  $4 \cdot 27$  판문점선언과  $6 \cdot 12$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

# ② F-35A 도입은 과잉전력으로 국민혈세만 낭비

- 일본의 『방위백서 2017』에 따르면 남한의 전투기는 620대, 북한은 560대로 남한이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THE MILITARY BALANCE 2016』에 따르더라도 556대를 보유한 남한이 545대를 보유한 북한에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 또한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질적으로도 남한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18여 대 뿐이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찬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 F-15K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160km인 반면 MIG-29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100km로 공대공 교전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남한 공군은 F-15K 1대가 북한 MIG-29 10대와 필적할 만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한 F-15K 전투기 1대가 北 미그-29 10대와 필적', 매일경제, 2009. 6. 19.) 따라서 F-35A 도입은 과잉전력으로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고,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뿐이다.

# ③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만능이 아니며,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기대효과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어

- 우리 군이 타 기종의 계약조건이 훨씬 나은데도 기종을 변경하면서까지 F-35A를 선택한 것은 스텔스 기능이 다른 기종보다 우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중대한 실수였다. 왜냐하면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기술을 찾거나 개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특성을 고려해 일정한 각도로 설계하여 전파를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거나 레이더 흡수물질(RAM)을 이용해 레이더반사면적을 크게 줄인다. 그러나 전파 중 VHF 대역(150~300MHz)의 경우전파의 파장이 1~2m로 길어 스텔스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호처리 개선과 대형 탄두미사일을 결합하면 스텔스 전투기를 조준하고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F-22·F-35, 요격될 수도 있는 이유: 저주파 레이더, 스텔스기 탐지 가능 … 신호처리 개선으로 미사일 유도까지", 월간 항공, 2018. 2. p80~81)

-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미 해군 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속에서 스텔스나 레이더 회피 기술의 가치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④ 주변국 잠재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목적의 위험성

- 국방부는 F-35A를 도입하면 주변국 잠재위협에 대비하여 자주역량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는 잘못된 판단이다. F-35A는 작전반경이 1,000km 를 상회하는 등 기본적으로 자위적인 방어무기 체계가 아니며 공격무기다. 이런 공격무기를 도입하면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도리어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또 한국의 현재 공군력으로도 충분히 주변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 주변국을 잠재위협으로 보는 위협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이 며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우리 스스로 종속을 자처하는 것이다. 국방부 주장은 군비 경쟁과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상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십 수 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일본 역시 육군 전력은 남한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항공 전력에 있어서도 남한을 공격해 승리할 만큼 전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 중국이나 일본과의 군비경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출혈을 자초하는 지름길이다. 중국과 일본은 GDP가 각각 113,830억 달러, 44,126억 달러로 13,212억 달러에 불과한 남한의 8.6배, 3.3배에 달한다(2017년 기준). 국방비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2,280억 달러, 453억 달러로 391억 달러의 남한의 5.8배와 1.2배에 달한다(SIPRI, 2017).

# ⑤ 첨단기술과 절충교역 확보 실패로 국내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

-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기종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한 F-15SE를 부결시키고 작전요구 성능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국방부는 협상 방식도 공개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어 F-35A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략했고, 첨단기술과 KF-X 개발에 필요한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AESA(위상배열) 레이더-전투기 통합 등 4개 핵심기술 이전 무산도 F-35A 도입을 위한 작전요구 성능 및 협상방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 언론을 통해 공개된 F-35 관련 문서에는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38 억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항목에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 기술 등 4개

핵심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 (F-35 기술이전 가치 부풀려졌다 … 공짜라던 위성엔 1,000억 지급 정황, TV조선, 2017. 10. 14.) 이는 F-35A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기종선정을 위해 절충교역에 4개 핵심기술 이전을 포함시켜 가치를 부풀렸고 최종 계약이 체결되자 핵심기술 이전을 모두 거부한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완제품 수입을 통해 전투기를 확보해 왔다. 국내면허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라도 미국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획득에 실패해 국내 항공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F-35A 도입과정에서도 첨단기술과 절충교역 확보 실패로 한국 항공 산업이 진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에 불필요한 F-35A도입을 중지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⑥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계약

####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 방식 비교>

대외군사판매(FMS)	조건	상업구매(DCS)
정부 대 정부	계약당사자	정부 대 업체
상한가 없는 개산계약	계약방법	확정 계약
한국 정부 납부	이행보증금	외국 정부업체 납부
부과 불가능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없음	선급환급 보증금	있음
추진 곤란	절충교역	가능(협상으로 범위 결정)
구매국 불이익 감수	계약위반 발생시	판매자 계약 위반시 고정된 벌금 부여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미충족	구매국 요구 수용 여부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충족

(「미국 대외무기판매제도(FMS)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문형일 2012. 2. p25

- F-35A는 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 방식은 계약조건이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 방식이다. 이에 국방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FMS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질의(2012. 9.)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국방부가 F-35A의 도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불리한 FMS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FMS 방식 도입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대외군사판매(FMS) 행정비를 미국에 내야하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선급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 그리고 FMS 방식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 스라엘도 FMS 방식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전자전 장비를 비롯한 자국산 부품을 장착하는 등 사실상 공동생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⑦ 지속되고 있는 성능결함, F-35A 인수를 거부해야

- 2018년 6월, 미의회 소속의 정부감독원(GAO)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F-35에서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80개는 2019년 양산 이전까지 개선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이런 지속적인 성능결함으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의 인수를 2018년 4월,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1개월 동안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 이처럼 지속적인 성능결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은 올해 F-35A 6대를 인수하였으며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군사무기의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한국군도 미 국방부와 같이 성능결함이 해결되기 전까지 F-35A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하자 유지 보수의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어 기습공격과 선제공격 임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스텔스 전투 기 F-35A의 도입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하며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무기다.
-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게 되는데 F-35A는 최우선적인 군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동북아시아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방어적 군사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F-35A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 F-35A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계약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고 각종 결함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그 성능 발휘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F-35 도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차기 전투기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2019년도 1조 5,561억 1,5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현무 2차 성능개량 양산 (2532-341)

#### 1. 개요

#### <현무2차 성능개량 양산>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442,654	442,654

# <현무 2차 성능개량 (R&D)>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05,450	105.45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① 탄도미사일의 성능(사거리와 탄두 중량)개량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타격능력 보유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한국군은 이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현무 2차 성능개량은 과잉전력이며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한국군은 이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500km의 탄도 미사일 현무-2B를 2009년 말부터 중부전선 00부대와 동부전선 00부대에 실전배치했다.("사거리 500km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 실전배치했다!", 월간조선, 2011. 3.) 또한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3A, 현무-3B, 현

무-3C를 2008년부터 양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다.

- 공군 역시 사정거리가 270km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SLAM-ER, 120km 사거리를 지닌 AGM-84 '하푼' 공대지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 500km가 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도입했다. 해군도 사거리 500~1,000km인 함대지 미사일 '해성-2'와 사거리 500km인 잠대지 미사일 '해성-3'을 보유하고 있다.

# ② 한국군 미사일은 이미 양질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성능개량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며, 혈세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 남한은 미사일 전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 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 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7. 9. 9.)

<남북한 미사일 전력비교 >

	남현	<u> </u>			북현	<u>i</u>								
종류 <sup>11)</sup>	사거리	수	 량	비고	종류 <sup>12)</sup>	사거리	수량	비고						
현무-1	180~250km	50013)	탄도 - 미사일	KN-02 <sup>15</sup> )	120km	100								
현무-2A	300km	4516)		ELE.	스커드 B <sup>17)</sup> (화성-5)	300km	600-800							
현무2B	500~800km					- - - - - - - - - - - - - - - - - - -		스커드 C <sup>18)</sup> (화성-6)	500km	000-000				
현무 2C	800km												800~	스커드 ER <sup>19)</sup> (화성-7)
현무 3A(천룡 1)	500km			노동 <sup>20)</sup>	1300~	200-300	비시크							
현무 3B(천룡 2)	1000km			순항	무수단21)	4000km	20~30							
현무3((천룡)	1500km		미사일	미사일	대포 <del>동</del> 22)	~10000km	10							
현무 3D/4	3000km	개발 중			KN-08/14 <sup>23)</sup>	~11500km	6							
ATACMS 블록 I	180km	111	_24)		KN-11 <sup>25)</sup>	1200km	개발 중	SLBM						
ATACMS 블록 IA	300km	110	<b>)</b> 26)		화성-14	10000km~	개발 중							
					화성-12	4500km								
					금성-3 <sup>27)</sup>	130~250km		지대함 순항						
소	계	1,0	)21~1,9	21	소	:계	1,000~1,30	00						

<sup>11)</sup>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south-korea/

#### <지대지 미사일 정확성 비교>

북한	탄착정밀도(CEP)	남한	탄착정밀도(CEP)
스커드-A	450~1,000m	현무-2A	30m
스커드-B	~1,000m	ATACMS	10m
스커드-C	~700m	현무-3A,B,C	5m 이내
노동미사일	~1,000-2,000m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력동향, 국방연구원 2017>

#### ③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의 불법 부당성

- 북한 전 지역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하면 사거리와 중량이 대폭 향상된 현무를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나 북한 지휘시설 등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이 사업의 목적이다.
- 그러나 이런 대북 선제공격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전쟁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도 위배된다.
- 더욱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은 그 명분이 상실되었다. 합동참모본부도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현무 2차 성능개량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sup>12)</sup>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sup>13)</sup> 세계일보, 2015. 6. 3.

<sup>14)</sup> 탄도와 순항을 통틀어 현무 미사일 800기 보유. 2017까지 개량 현무2, 3 900기 추가 보유, 1,700기 무장 예정. 2018~2020년 300기 추가 생산, 모두 2000기 확보 예정 (SBS, 2016. 1. 25.)

<sup>15)</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02/

<sup>16)</sup> 세계일보, 2015. 6. 3.

<sup>17)</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등 참조

<sup>18)</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6/ 정규수, 『ICBM, 그리고 한반도』등 참조

<sup>19)</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7/

<sup>20)</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no-dong/

<sup>21)</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musudan/

<sup>22)</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taepodong-2/

<sup>23)</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08/, 미국방부 의회보고서,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PRK 2013」등

<sup>24)</sup> 세계일보, 2015. 6. 3.

<sup>25)</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11/

<sup>26)</sup> 세계일보, 2015. 6. 3.

<sup>27)</sup>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umsong-3-kh-35-variant/

- 현무 2차 성능개량사업은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며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④ 현무 2차 성능개량은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

-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누구보다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 · 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남한의 대북 선제 공격 능력 확대가 가져올 한반도의 전쟁위험 증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대규모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및 책임"이라며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알렉산드로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12년 10월 9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반 도 군사정치 상황의 추가적 악화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 지도부의 이 같은(사거리 연장)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해왔다."면서 "미국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신호가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밝혔다.
-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연장되는 현무 성능개량사업이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거리가 연장된 남한의 탄도미사일이 비단 북한만이 아니라 자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불필요한 과잉전력이고 판문점·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역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현무 성능개량 양산 예산 4,426억 5,400만 원 전액 삭감
- 현무 성능개량 R&D 예산 1,054억 4,500만 원 전액 삭감

# (13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2531-315)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234,655	′18 ~ ′28	13,125	13,125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사업 목적) 적 종심의 핵심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연구 개발하여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 효과) 전력화 시 적 종심 주요표적에 대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군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과 전쟁 억제 달성을 위한 자주적 정예 군사력 수단 확보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 목적이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된다.
- 국방부는 500km의 사거리를 갖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장차 개발 예정인 한국형 차기 전투기(보라매)에 탑재해 적(북한) 종심의 핵심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말한다. 즉 2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단계에서 북한지휘부를 공격하는 '킬체인'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의 미사일로 개발되는 것이다.
-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 시 선제공격해 북한 지휘부 또는 이동식 발사대 등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무모한 작전수행체계다. 킬 체인은 폐기되어야 할 작전개념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상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
- 또한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5조 1항) 평화통일을 규정함으로써 무력통일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북한 선제공격 용도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
- ②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역행한다.
- 북한 지도부의 괴멸을 목적으로 하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 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며,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또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를 합의한 평양 선언과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 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킬 체인과 같은 대북 선제공격작전을 폐기하고, 이 같은 선제공격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③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예산당비가 우려된다.
- 남한은 2013년, 사정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KEPD 350K) 170발을 도입(도입가 4900억 원)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16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갔고, 2018년 초에는 90발(2000억 원)을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타우러스는 F-15K 한 대에 두발을 장착할 수 있다. 260발이면 F-15K 60대 모두를 무장시키고도 140발이 남는다. 현재도입하기로 결정된 타우러스 260발도 과잉전력인 셈이다.
- 남한 공군은 타우러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 공군은 사정거리 270km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SLAM-ER, 120km의사거리를 지닌 AGM-84 '하푼' 공대지 미사일도 다량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중복사업이며 만약 전력화된다면불필요한 과잉전력이 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도 오래 전인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외에

도 공군은 탄두중량은 작으나 사거리 및 유도방식이 유사한 다양한 공대지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공대지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방위사업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73쪽)

- 공군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사거리 500~1,000km의 함대지 미사일 '해성-2'와 사거리 500km의 잠대지 미사일 '해성-3'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 3A, 현무 3B, 현무 3C를 2008년부터 양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3군 합동작전의 관점을 결여한 것으로 공군 이기주의의 표출이자 예산낭비라 할 수 있다.

#### ④ 사업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으므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

- 한국 국방연구원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타당성 조사(2016. 11~2017. 6)에서 "군의 독자적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예산 반영 타당"(방위사업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 서』, 2017. 9. 1,258쪽)하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군의 독자적 타격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는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군의 공대지, 지대지, 함대지 미사일 전력은 이미 주한미군의 미사일 전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재정법 제50조 3항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22조 5항은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차 사업은 중복투자와 전력낭비가 확실한 만큼 국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상 재조사를 의결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50조 3항에 따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 하도록 의결한다.

#### 5. 삭감요구액

- 내년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예산 13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 (43) K-2 전차 (2232-302)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2,0810,44	′10~′21년	2,092	2,092

#### 2.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사업목적> 현용전차 노후 심화로 전력 발휘 및 운영유지 곤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전투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첨단전차 개발 및 전력화
- ② <기대효과>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 전쟁 억제력 보유 군 전력구조 개편 시 병력 수 감소에 대한 질적 개선 가능

####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사업 목적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북한 기갑 전력에 대한 질적 우위 확보"를 제외한 것은 K-2사업을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음을 자인한 셈
- 2018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까지 방위사업청은 "수적으로 열세인 북한 기갑 전력에 대해 질적 우위 확보"를 K-2 사업의 핵심 목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2019 회계연도 예산(정부안)을 보면 사업목적에 북한 기갑전력에 대한 질적 우위 확보 부분이 빠져있다.
- 그동안 국방부(『국방백서 2016』)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MILITARY BALANCE 2016』, 265~266쪽) 등은 남북 간 전차 대수 비교에서 남한 구형 전차는 제외하는 반면 북한 구형 전차는 포함시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신빙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28)
- 방위사업청이 K-2 사업의 목적에서 수적 대북 열세를 질적 우위로 상쇄한다는 것을 제외시

<sup>28)</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년 국방예산 의견서」 평통사, 2017. 11. 6. 을 참고

킨 것은 국방부가 전차 전력에서 남한이 대북 열세에 있다는 그간의 주장이 잘못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이에 K-2 전차 사업의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K-2 전차 사업의 명맥을 이어가려는 알팍한 생각을 접고 떳떳이 K-2 전차사업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맞다.

#### ② 남한은 K-2를 제외하고도 북한 기갑전력에 대해 질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MILITARY BALANCE 2016』, 267쪽)에 따르면 현재 남한 육군은 253대의 M48, 597대의 M48A5를 보유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운용 중인 200여대의 M48A3K, 400여대의 M48A5K 가운데 M48A3K는 K-2전차 전력화와 연계해 2021년까지, M48A5K는 운용유지비용 절감차원에서 조기에 도태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2018. 10. 19.)
- 그런데 북한 보유 전차 중 비교적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00~800여 대의 T-62와 T-62 개량형으로 알려진 천마, 폭풍(선군호)뿐이다. 반면에 남한이 보유한 신형전차는 K-계열 1,584대 이상(K1 1,000대, K1A1 484대, K-2 100대 이상), T-80전차 80여 대로 신형 전차보유에서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남한이 전차 전력에서 질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M48 계열 전차를 도대시킨다 해도 북한 기갑전력에 대한 남한의 질적 우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9년에 이미 K-2 전차를 제외하고도 남북 간 전차 전력 비교에서 남한이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질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국방위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64쪽, 2008. 11. 11.)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전문가도 "육군의 핵심 전력인 기갑 전력에서 북한의 탱크와 장갑차 등은 노후했을 뿐아니라 장착 무기와 전자 장비 면에서 남한의 적수가 되지 못 한다."(SBS, 2013. 3. 31.)며 북한의 개전은 자살행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 ③ 변속기, TMMR, 대응파괴체계 관련 현안의 미해결로 첨단 전차를 개발한다는 K-2 사업의 애초 사업 목적은 달성을 기약할 수 없다.

- 애초 군은 2010년까지 1,500마력의 엔진 및 변속기를 장착한 국산 파워팩을 연구, 개발해 K-2 전차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산 파워팩 개발은 수차례 결함이 발견되어 개발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초도 양산 100여대에 적용할 파워팩을 독일산 파워팩으로 대체하고 국산 파워팩은 2차 양산부터 적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기로 결정(제63회 방추위, 2012. 12.)하였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 국산파워팩의 내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차 양산분 106대에 대해서도 결국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결정(2018. 2. 7.)하였다.
- TMMR(다대역다기능무전기)는 2014년 개발시험평가 19개 항목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2015년엔 작전운용성능(ROC)에서 보완이 불가능한 항목을 하향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비 대비 통달거리 저하, 음성 품질 저하 등 6개 항목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2015년)을 받자 2016년 미달 항목 6개를 추가로 삭제하고 TMMR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K-2 전차의 핵심무기체계인 대응파괴장치(KAPS)는 방위사업청이 2012년에 개발 완료를 선언했으나 소프트 킬 시스템과 연동 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 양산 검증과정에서는 기 개발된 대응파괴장치 성능을 기준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음(2017. 3. 21.)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현재 "TMMR 대응파괴장치 관련 현안 미해결" (방위사업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360쪽) 상태다.
- 이와 같은 문제는 K-2 사업이 무리한 작전요구능력(ROC) 설정과 국내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만약 군이 ROC를 낮춰 국내 기술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첨단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전차 도입을 고집하지 않고 기존 K1, K1A1 전차의 성능 개량에 치중했더라면 노후 전차 도태와 전력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④ 사업목적('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 전쟁 억제력 확보')의 타당성 결여

- 남한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 전쟁 억제력 확보'라는 사업목적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명 박 정권 당시 국정원은 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을 인용해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한 결과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신동아』, 2010. 3월호) 또한 북한의 국방비는 9.1억 달러(통일부 추산, 2013년 기준)로 남한의 국방비 368억 달러(『SIPRI 2016』)의 1/40에 불과하다. 경제력을 포함한 전쟁수행능력에서 남북 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남한과 한반도를 침공할 수 없다. 일본은 미 동맹국 중에서 제6위의 지상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3.59%), 남한은 제2위의 지상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9.72%)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이 지상 전력에서 일본의 무려 2.7배에 달하고 공군 전력에서도 거의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 해군 전력이 앞선다고 전체적으로 남한은 일본에 대해 군사적 열세에 있지 않다. 일본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공을 할수는 없는 것이다.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ce」, July 2003)
- 한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상 전투력(공군력 포함)에서 827점으로 289점의 남한 의 약 2.86배(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2003. 6. 27. 642쪽)다. 설사 전체 중국 전력을 상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중국 전력의 ½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1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16,000 km의 육상 국경선과 12,000km의 해상 국경선을 지켜야 하며, 티베트, 신장 등 내부 문제와인도,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하므로, 남한과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중국 전체 전력이 아니라 동북부와 동부지역 일부 전력에 한정한 지상 전력만을 동원할 수 있을 뿐이다.

-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공격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군을 두만강, 압록강까지 전진, 장기 배치하지 않는 한 한미연합군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의 전차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전장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전쟁 억제력 보유 주장은 전차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가상에 불과하다.

# ⑤ 이른바 '입체고속기동전'의 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K-2 전차 도입의 불법성과 무모성

- K-2 전차는 기존 전차에 비해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북한으로 진격 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력도하능력도 갖추고 있다. 군이 이러한 고성능전차 도입을 고집하는 데에는 적 격멸과 통일 여건 조성이라는 위헌적이고 초공세적인 전략 목표 아래 공지전 교리에 입각한 '입체고속기동전' 수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북한 지역에서의 민사작전 수행 등을 위한 공세 전력을 확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초공세적인 입체고속기동전은 무력통일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도 위배된다.
- 전차를 동원한 입체고속기동전은 한반도와 같이 국토 전체가 대부분 산악으로 이뤄진 지형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작전개념이다. 원래 기동전은 독일이나 소련과 같은 평원이 넓은 전장 환경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착잡한 격실 지형, 제한 된 도로망, 국토를 횡단하는 대소의 하천 등으로 인해 기동부대의 속도가 저하되는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서는 적용되기힘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작전형태다.
- K-2전차와 헬기를 이용한 입체고속기동전은 육군이 자신의 주도 하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중시하는 합동전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등육군 중심주의의 발로다.
- 육군은 2009년 처음 K-2의 전체 소요량과 총사업비를 600대, 5조 7,573억 원으로 제기했다가 2011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0여대, 3조 7,283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어 2012년에는 다시 200대, 1조 9,079억 원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소요량과 총사업비를 400여대, 3조 5,179억 원으로 증가 시킨 2018년 예산(안)을 요구했다가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다시 200대 2조 810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전체 소요량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K-2 전차사업이 일정한 목표

나 기준이 없이 육군의 예산 따내기나 몸집 불리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⑥ 아전인수식의 기대효과(병력수 감소에 대한 질적 개선가능) 설정

- 방위사업청은 K-2 전차사업의 기대효과로 "군 전력구조 개편 시 병력 수 감소에 대한 질적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런 기대효과 설정은 병력 수가 줄어드는데 그에 따른 전력 공백을 전차를 증강해 메운다는 사고발상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발상은 현재 과도한 몸집의 육군 병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 3군 균형발전, 정예군화, 선진적 국방인력운용 등 전력 향상을 위한 절대적 요구임을 잊고 있다. 또 이런 사고발상은 과잉전력의 전차를 줄이는 것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는 작전을 구사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예산 낭비를 막는 길임을 망각하고 있다.
- 작지만 강한군대를 표방하는 국방개혁은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육군의 대병력을 과감히 감축하여 정예병화하는 동시에 3군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선진 정예군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점에서 국방개혁의 제일차적 성공척도는 비대한 육군의 몸집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육군의 몸집이 간소화되어야 비로소 3군의 균형발전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하면 전차에 대한 의존도(현재 기계화 사단은 6개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
- 또 남북은 불가침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상대를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기습공격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무기체계 중의 하나가 전차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기습공격능력 제거가 우선적목표가 될 것이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전차 전력의 무모한 증강은 중단되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K-2 사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군의 무리한 작전 목적과 소요 제기, 국내 기술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밟지 않은 채 무조건 예산이나 많이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원인이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예산을 승인한 국회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가 또 다시 K-2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국민 혈세의 낭비로 국회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2019년 K-2 전차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K-2 전차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육군의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패키지 시설비 20억 원 등을 삭감하고 총사업비 관련 1,141억 원에 달하는 2019년 이후 의 투자계획을 폐기해야한다. 아울러 3차 양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 (105) 장보고-Ⅲ Batch- I (2332-322)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3,163,594	2007년~2024년	299,092	299,092

####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① 지주국방 구현과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중형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장보고-III Batch- I 사업은 그 목적이 근거를 상실했으며, 과잉전력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장보고-Ⅲ 잠수함을 건조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거 해군이 보유했던 그 어떤 잠수 함보다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자 함이다. 선체의 대형화로 선체 상부에 설치된 6기의 수직발사관(VLS)을 장착하여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지상 타격능력을 확보함으로서 3축 플랫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개선된 성능의 공기불요추진(AIP : Air Independent Propulsion)장치를 탑재하여 장보고-Ⅱ 잠수함 보다 잠항 지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 우선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서 그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쇄 또 그에 상응한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이 이뤄지고 있어 3축 체계 구축은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또는 핵미사일 발사 때 북한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의 장보고-Ⅲ는 이제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6·12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 위배된다.

- 더욱이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손원일 잠수함(214급, 1800t)에 장착된 공기불요추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독일제)은 잠함지속시간을 2~3주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의 AIP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적어 효율이 높고 다양한 해양위협 대처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가령 이종무함(209급 1,200t)은 1998년 림팩에 처음 참여하였지만 유일하게 단 한건의 장비고장도 없었으며,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등 총 13척을 격침한 바 있다. 장보고함(209급 1,200t)은 2004년에 림팩에 참여해 미 해군 최신예 항공모함 등 30여 척을 격침하고 훈련이끝날 때까지도 유일하게 위치를 들키지 않아 'Perfect Submarine' 칭호를 받았다.("취재파일, 고군분투 209급 잠수함 … 간절해지는 '원잠'의 꿈", 2015. 6. 27. SBS)
- 따라서 장보고-Ⅲ 잠수함의 구축은 사업목적을 상실했으며, 과잉전력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② 남한의 작수함 전력은 북한에 대해 질적으로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더욱이 한국군의 잠수함 전력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보다 수적으로는 적지만 성능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북한의 주력인 로미오급(1800t) 잠수함은 1930년대에 소련이 설계했던 잠수함으로 그 설계가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전수된 매우 낡은 기술이며 '물속의 경운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음이 크다. 또한 하루에 2번 가량 수면 위로 올라와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스노클랑'(Snorkeling)을 해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다. (연합뉴스, "북 평북서 미사일 발시준비 징후 … 로미오급 잠수함 미복귀" 2017. 7. 25.)

<표1> 남북 잠수함 전력비교(Military Balance 2016)

	북한		남한		
	구분 수량		구분	수량	
SSB	신포급(2000톤)	1			
CCIV	CCV 7,000 5)		장보고209(1200 <u>톤</u> )	9	
SSK	로미오급(1800톤)	20	손원일214(1800톤)	4	
SSC	상어급(350톤)	32	코스모스(70톤)	11	
SSC	상어급-피	32	돌고래(150톤)	11	
CCM	유고급(90톤)	20			
SSW	연어급(130톤)	약간			

- 북한의 로미오급(1,800t) 잠수함은 최대속력이 13노트이며 한국의 손원일 잠수함은 최대속력이 20노트이다.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에 대한 이해 100문 100답) 무장에 있어서도 북한의 로미오급(1,800t)의 경우 21인치 어뢰를 8기 장착할 수 있고 손원일함(1,800t)의 경우 16기를 장착할 수 있다.

#### ③ 주변국과의 해군 군비경쟁을 예고하는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사업목적이 상실되고, 과잉전력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보고·Ⅲ 잠수함을 추진하는 이유 는 한국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원양작전 즉 주변국의 해군력과 경쟁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 장보고-Ⅲ 잠수함은 일반적으로는 3,000톤급 잠수함으로 분류되지만 수중 배수량이 3,700톤을 훌쩍 넘으며, 전체적인 크기는 4,200톤급 잠수함인 일본의 소류급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장보고-Ⅱ 잠수함 보다 대형화된 선체 덕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적재하면서도 개선된 성능의 공기불요추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장치를 탑재함으로서 작전반경 및 수중작전시간을 대폭 늘렸다. 또한 장보고-Ⅲ 잠수함은 앞서 밝혔듯이 수직발사관 6개를 장착해 사거리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 이런 긴 작전반경과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장착은 한국방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서는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 한국 해군은 2018년 10월 1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3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 함대 창설 추진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 기동함대 사령부가 "먼 바다로 작전 영역을 확 대해 해상 교통로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 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상 교통로 확보는 주변국들을 위협으로 여기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 로 우리 스스로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자초하게 된다.
- 또 한국은 독자적인 해군력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에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실 '해상 교통로' 보호는 미국 해군이 지역 및 세계 해상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 등 동맹국에게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 주변국들의 해군력과의 경쟁을 자초하고 미 해군에 종속될 것이 뻔한 대양해군은 중지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한 장보고-Ⅲ 사업도 중지되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장보고-Ⅲ 잠수함 구축은 과잉전력이며,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해군의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사업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장보고-Ⅲ 사업은 중단 되어야 한다. 이에 장보고-Ⅲ Batch-Ⅰ 2019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장보고-Ⅲ Batch-Ⅱ, 장보고-Ⅲ 전투체계(R&D), 소나체계(R&D)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장보고-Ⅲ Batch- I 예산 2,990억 9,200만 원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91)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3,932,820	′14~′28년	514,684	514,684

#### 2. 국방부(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① <사업목적>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대왕급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급 구축함을 국내 건조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 최신 이지스급 함정 확보를 통해 북의 위협으로부터의 국민안전 보장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해양 주권 수호 가능(방위사업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8. 9. 726쪽)
- 탄토탄 대응에서 전투체계 성능 개선으로 **탄도탄 요격 기능 추가**와 탐지·추적거리, 동시 추적, 추적 속도 등 대응 능력이 Batch- I 대비 약 2배 이상 향상. 또한 대잠작전에서 심도 조절 가능한 저주파 대역의 음파탐지기를 추가(1대) 탑재해 적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향상될 것으로 예상.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16. 6. 24.)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로 사업의 명분이 없어졌다

-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도탄 요격기 능 추가 및 대잠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의 목적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남・북 및 북・미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데 합의하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남북 및 북미 정상

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나아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한 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측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을 사게 된다.

- 이 사업이 시작된 2014년과 달리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되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병행이 원칙으로 정착하였으며 북미 사이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책들이 합의·이행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핵대결 정세를 배경으로 착수된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②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이 사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현재 남한이 총톤수나 작전능력(특히 대잠전 능력) 등 해군력의 거의 모든 면에서 대북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탄도탄 대응 능력이나 대잠전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현재 총 톤수로 보면 남한 해군은 21.5만 톤으로 북한 11.1만 톤의 2배가 넘는다.(『일본 방위백서 2018』) 그렇기 때문에 8,000톤에 이르는 대형 구축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하면 그것만으로도 남북 간 총톤수 격차는 더 늘어난다. 또 남한은 구축함을 12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일본 방위백서 2018』)
- 더욱이 "북한 해역은 동·서로 분할되어 북한 해군의 융통성 있는 작전이 어렵고, 전력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된다는 지적처럼 북한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작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설사 해군력이 남한과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남한에 대해서 작전능력이 우위를 점할 수 없다.
- 한편 북한과의 전면전 시에는 남한 해군은 남한 또는 북한 연근해에서 작전을 하게 될 것인 바, 8,000톤이나 되는 대형 구축함은 연안 방어 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전력이다.
- 북한의 비대칭위협 곧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도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표1>에서 보는 바처럼 남한이 미사일의 수나 정확도에서 북한을 앞서는 바, 북한 미사일을 비대칭위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경향신문, 2017. 9. 9.)라고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비대칭위협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표1>남북 미사일 전력 비교

남한						북힌									
종류	사거리	수	량	비고	종류	사거리	수량	비고							
현무-1	180~250km	500*			KN-02*	120km	100								
현무-2A	300km	45**		타도	스커드 B* (화성-5)	300km	600-800								
현무2B	500~800km		800~ 1700 <sup>29),</sup>								미사일	스커드 C* (화성-6)	500km	000-800	
현무 2C	800km						스커드 ER* (화성-7)	1000km	수 기	탄도 미사일					
현무 3A(천룡 1)	500km				노동*	1300~	200-300	미시ㄹ							
현무 3B(천룡 2)	1000km						순항	무수단*	4000km	20~30					
현무 3((천룡)	1500km				미사일	대포동*	~10000km	10							
현무 3D/4	3000km	개발 중			KN-08/14*	~11500km	6								
ATACMS 블록 I	180km	113	L**		KN-11*	1200km	개발 중	SLBM							
ATACMS 블록 IA	300km	110	110**		화성-14	10000km~	개발 중								
					화성-12	4500km									
					금성-3*	130~250km		지대함 순항							
소	소계		21~1,9	21	소	·계	1,000~	1,300							

출처: \* https://missilethreat.csis.org \*\* 세계일보 2015. 6. 3.

- 이지스함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방어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지형 상 2~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합참이 소요결정(2017년 9월)한 해상 탄도탄요격유도탄의 작전요구성능(ROC)은 요격고도가 100km 이상으로, 사실상 SM-3 미사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 요격용인 SM-3 요격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대부분 내대기권에서 형성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북이 남을 겨냥할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될 탄도미사일은 KN-02(사거리 최대 160km), 스커드 B(사거리 300km), 스커드 C(사거리 500km)인데 이들의 최고 고도는 각각 40km 내외, 90km 내외로 SM-3 요격미사일의 최저 요격 고도보다 낮으며, 정점 고도가 150km에 이르는 스커드 C도 정점 고도를

<sup>29)</sup> 탄도와 순항을 통틀어 현무 미사일 800기 보유. 2017까지 개량 현무2, 3 900기 추가 보유, 1,700기 무장 예정. 2018~2020년 300기 추가 생산, 모두 2000기 확보 예정 (SBS, 2016. 1. 25)

지나 SM-3의 최저 요격 고도(100km)까지 비행하는 시간이 불과 1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SM-3로 요격하기 어렵다.

- 설령 북이 사거리 1000~1300km의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남을 타격 하더라도, 이동 발사대를 이용하거나 동시다발로 발사하면 이를 탐지, 식별해 타격하기 어렵다.

#### ③ 미국 MD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대중 미일 MD 작전에 동원되게 됨

- 탄도탄 요격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는 광개토 III-Batch II 사업은 우리 군이 종말단계 상층 및 하층 요격체계와 함께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요격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려는 것이다.
- 남한 해군의 탄도미사일방어는 그 대상이 한국을 향하는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될 것이다. 광개토-Ⅲ Batch-Ⅱ에 탑재하려는 SM-3 요격 미사일은 SM-3 블록 Ⅱ의 경우 요격 고도가 1,450km(미 과학자연맹)에 달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미 미사일방어청도의회 보고서(CRS, 2018. 8.)에서 SM-3 요격미사일을 "ICBM급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블록 ⅡA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군은 서해나 동해에서미국으로 향하는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격고도가 600km에 이르는 SM-3 블록 IA나 블록 IB를 도입할 경우에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본과오키나와를 향하는 북중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일본 본토를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 광개토-Ⅲ Batch-Ⅱ에 탑재되는 '베이스라인 9'는 미국방부 시험평가국에 따르면, 미국의 이지스 BMD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 레이더(AN/TPY-2, 전방모드)로부터 정보를 받아 SM-3 블록 1B로 요격하는 원거리 교전능력(remote engagement capabilities)도 실험된 바 있어 미국의 다른 MD 체계와도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한미일은 이미 자국의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경보훈련을 하와이 인근과 동해, 남해 등에서 실시하였다.(Pacific Dragon 훈련) 특히 2017년 12월에 있었던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에 우리 함정은 우리 해상에서, 일본 함정 1척과 미국 함정 1척은 일본 근해에서, 나머지 미국 함정 1척은 미 본토 인근에서 참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우리 이지스함이 미일을 위한 MD 작전에서 탐지, 추적 자산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한・미・일 이지스함의 연합 탐지・추적 MD 연습은 이제 탄도미사일요격 연합연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결국 한국이 SM-3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한국 이지스함은 주로 미일을 겨냥한 북한 및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한국 이지스

함이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동북아 MD 작전을 통제할 미군이 한국 이지스함을 미 본토 방어와 일본 방어에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입한 우리 무기체계를 유사시 미일 방어 작전에 내어주게 되는 셈이다.

-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사드 도입과 함께 한국을 미국 MD에 전면 편입시키게 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괌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탐지, 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 태평양 사령부와 전략사령부에 제공해 준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은 괌과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부터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SM-3 요격미사일은 사드 체계와 함께 정보와 요격작전 양 측면에서 한국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국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게 된다.
- 문재인 정부가 이미 미 MD 편입을 부정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사실상 미일 MD 무기체계로 될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 ④ 주변국과 해양 분쟁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독도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군비경쟁과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을 상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공격한다는 것은한일 간 전쟁을 상정하는 것인데, 이는 현 정세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하여 해양법상 '수중 암초'로 공해다. 섬이 아닌 '수중 암초'는 접속수역, 영해, EEZ, 대륙붕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어 한국가의 영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만일 한・중・일이 이어도에서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외교와 협상이 아닌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설령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니라 해경이 나서야할 문제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일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군비경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국과일본은 GDP가 각각 14조 900억 달러, 5조 1,700억 달러로 1조 6,900억 달러에 불과한 남한의 8.3배, 3배에 달한다.(2017년 기준) 국방비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2,282억 3,100만 달러, 453억 8,700만 달러로 391억 5,300만 달러의 남한의 5.8배와 1.2배에 달한다.(SIPRI, 2017)한국은 중국, 일본과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 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른 도입으로 국익 훼손 우려

- 광개토-Ⅲ Batch-Ⅱ에 탑재할 전투체계는 미 이지스체계로, 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미 국

방안보협력국(DSCA)은 국무부의 판매 승인을 발표하고 관련 장비까지 포함한 총판매 금액이 19억 1천만 달러(약 2조 1천 4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2015. 6. 10.) 그런데 FMS 방식은 미국의 판매 절차와 조건에 따라 구매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와 해외 무기획득사업의 과제>(2012)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FMS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구매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FMS 주요 계약 조건인 가격, 납기 등에 있어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하더라도 구매국이 손실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점에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계약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아가 FMS 방식은 미 정부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의 추가 낭비가 예상된다.

- 한편 요구 성능과 절충교역 등 록히드 마틴사와의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투명 성을 결여하고 있다

## ⑥ 막대한 추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 SM-3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138억 원(SM-3 블록 IB)에서 343억 원(SM-3 불록 IIA, 2019년 미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군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III Batch-II 1척당 32발을 도입할 경우를 상정하면 3척에 96발, 최소 1조 3,248억 원에서 최대 3조 2,928억 원이 소요됨)
- 더욱이 미 의회는 SM-3 블록 IIA의 경우 재설계, 소프트웨어 실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등 추가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가가 추가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4. 결론 및 제안

-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애초 설정한 사업 목적이 근거를 상실하였거나 아니면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였다. 또 이 사업에 의해 도입되는 이지스함의 탄도탄 요격체계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을 뿐 아니라 미 MD에 가입하고 대중 포위 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이 크므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막대한 재정적부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의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 5. 삭감 요구액

- 이에 2018년도 예산 5,146억 8,4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

# (147/150)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수직형)

## 1. 개요

# (1)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2532-318)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완료	1,051,23	′15~′19년	5,629	5,629

# (2)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2532-323)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2,575,87	′18~′26년	17,973	17,973

## 2.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① (사업목적) 차기호위함(FFX)에 탑재하여 적 종심지역의 지상군 병력 및 장비 등의 표적과 지대함 유도탄기지 및 해안포 통제 R/S 등 연안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전술함 대지 유도탄 확보

## ② (향후 기대효과)

- 전쟁초기 접적 해역에 위치한 적 지대함 유도탄 및 해안포 통제 R/S 등 연안표적 무력화 가능
- 적 전방 집단군을 지원하는 기계화부대 병력 및 장갑차, 군수물자의 전방집중 차단 가능
- 함정에서 지상타격능력 보유로 동해 및 서해 연안에서 적 지상 중심 지역까지 입체적(육해 공) 작전 지원 가능

-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으로 비인도적 불법무기이다.
- 차기호위함(FFX-Ⅱ, Ⅲ)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북한 연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확산탄 무기다.
- 넓은 지형에서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인 확산탄은 민간인의 무차별 살상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이다.
- 또 확산탄인 전술함대지 유도탄은 확산탄 금지조약에도 위배되는 무기다.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지만 남북한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확산탄 금지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이재승, 2010. 10. 16.)
- 군 전문가들은 확산탄 개발과 사용이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5년 예멘에서 확산탄을 사용한 사우디에 확산탄을 수출한 미국이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사우디에 확산탄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2016. 6)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야한다.
- ②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 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됨으로써 북한 연안표적 무력화라는 사업 목적은 그 명 분과 근거를 상실했다.
- 북한은 해주 100문, 장산곶, 옹진반도, 강령반도에 900문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 안과 주변에 1,000문의 해안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까지 단행됨으로써 향후 동, 서해역에서의 모든 포성과 총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 연안표적 무력화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사업은 그 명분과 근거가 사라졌다.
- ③ 킬체인(대북 선제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로 헌법 및 국제법 위반이며 남북, 북미 정상의 판문점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합의에 반한다.

- 사거리 200km의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북의 지대함 유도무기 사거리 밖에서 해병대 상륙작전에 앞서 북한 레이더 사이트, 해안포기지, 지상군 병력이나 장비를 표적으로 하는 전형적 공격무기다. 전술함대지유도탄 수직형은 함정의 진행방향과 상관없이 360도 전 방향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공격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 이전에는 3,000톤 급 이상의 구축함에만 함대지 공격능력을 갖췄다면, 전술함대지유도탄을 호위함에 탑재함으로써 함대지 공격능력을 기존 해역 함대의 주력함인 호위함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 원점'을 포함한 지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킬체인 구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잠대지미사일과 더불어 해상 킬체인 전력의 하나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의 사거리는 최대 200km로 동, 서해에서 발사하면 지상에 위치한 적의 주요 기지뿐 아니라 탄도탄 발사체계 등 핵심시설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
- 전술함대지유도탄 도입 사업은 대북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에 배치되고 유엔헌장(51조)의 자위권 발동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또 대북 선제공격 수행을 위한 전술함대지유도탄사업의 추진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체제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 정면으로 반한다.

# ④ 과잉 전력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남한은 해군력에서 대북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남한 해군력은 총톤수에서 21.5만 톤으로 북한 11.1만 톤의 2배가 넘는다.(『일본 방위백서 2018』) 특히 "북한 해역은 동·서로 분할되어 연안작전 시 해군의 융통성 있는 작전이 어렵고, 전력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 된다. 이에 현재의 전력 만으로도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남한이 해상 우위를 점하게 되리란 것은 필지의 사실이며 남한 방어를 위한 더 이상의 해상정밀유도무기 및 플fot폼은 불필요하다.
- 남한이 해군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연안은 물론이고 북한 내륙 종심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은 한국방어에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고 예산 낭비다. 또 남북의 단계적 군축 합의를 이행하게 되면 우선적인 군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낭비적인 사업이다.

- 더욱이 이미 과잉전력인 전술함대지유도탄을 수직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 사업으로 국민 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남북,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했다. 또 남북 간 9·19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에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지되었다. 이제 전술함대지유도탄 사업을 계속 추진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졌다. 확산 탄의 일종인 전술함대지유도탄 사업의 중단은 확산탄의 개발과 사용, 수출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남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전술함대지유도탄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모든 확산탄의 생산과 비축 사용을 중단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5. 삭감 요구액

- 56억 원 규모의 전술함대지 경사형 예산의 삭감, 180억 원에 이르는 전술함대지유도탄 수직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총사업비 관련 2,196억 원에 달하는 2020년 이후의 투자 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 (34)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2133-300)

#### 1. 개요

(단위: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 업청	계속	951,555	′08 ~ ′19	199,704	199,704

## 2 국방부(방위사업청)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확보
- ②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이유

#### ①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위험성

-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북한 면적보다 넓은 14만km에 이르는 지역을 36시간에 걸쳐 단속 없이 탐지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호크의 작전성능은 이 무기체계가 대북 감시정찰용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정찰 무기체계로서 운용될 것임을 말해준다.
- 이미 방위사업청은 글로벌호크의 도입목적의 하나로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지방이나 동부 연안, (극동)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정찰감시 능력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 그러나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이나 (극동)러시아, 일본 등을 전략적으로 감시·정찰하게 된다면 이들 나라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중국은 글로 벌 호크의 자국 근접배치를 새로운 대공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우리 군의 전략적 정찰감시 자산은 미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운용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전략적 정찰감시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대미 군사적 종속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이 글로벌 호크의 대한국 판매에 동의한 것도 대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결국 우리 군이 주변국을 상대로 전략적 정찰감시 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감시의 전초기지로 전략하게 되고, 이는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에서 보이듯이 새로운 한중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 ② 한국군은 대북 전구작전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전략·전술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을 갖추고 있다

-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국 방부 전시작전통제권 T/F,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 13쪽)고 밝힌 바 있다.
- 더욱이 국방부는 2016년부터 백두 정찰기의 성능개량을 진행하여 운행고도를 높이고, 체공시간을 늘렸다. 또한 10km 상공에서 북한의 주요시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고도 무인정찰기인 KUS-15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 남한군은 현재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략 영상정보에 대해서만 미군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한은 아리랑 2호(해상도 1m)와 아리랑 3호(해상도 70cm)를 통해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합성개구레이더를 장착해 전천후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아리랑 5호(해상도 1m)를 통해서 고해상도의 전략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조 78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의 군사 정찰위성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 이처럼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전술적 및 일부 전략적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감시를 위해 1조원 이상이 드는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 ③ 글로벌 호크 도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역행

- 우리 군이 독자적인 대북 정보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이상이 드는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대북 선제공격 체계인 킬체인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

설이나 지휘부 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 뉴욕 타임즈는 인터넷판 사설(2012. 12. 29.)에서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보유할 경우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게 된다."며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호크가 북한 전역에서 확보한 정보가 한반도 위기를 국지전으로, 국지전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구축은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에서 핵 대결과 군비경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실현에 합의한 판문점선언,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기로 한 평양선언에 역행한다.
- 특히 북한의 종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찰/감시활동을 위한 글로벌호크의 도입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여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로 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 ④ 글로벌 호크는 단순히 감시정찰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다

- 글로벌 호크는 미사일이나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감시·정찰자산의 도입이라는 사업목적에 위배된다. 글로벌 호크는 RQ-4A가 2천 파운드, RQ-4B는 3천 파운드의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사저널, 2011. 9. 28.) F-5E 타이거 Ⅱ와 같은 구형전투기 무장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무장력이다.
- 따라서 글로벌 호크는 대북 정찰·감시 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일 경우 곧바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남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선제공격 무기인 셈이다.

#### ⑤ 국방부가 내세우는 사업 목적이 충족되기 어렵다

- 국방부가 도입하는 글로벌 호크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작전수행능력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 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글로벌호크'에는 통신감청 기능이 빠지고 군사 동향을 실 시간 촬영하는 영상 수집 장비만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군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영상정보를 습득해도 영상정보를 판독할 영상정보처리체계(표적촬영→판독→정보전송)가 우리 군에게는 아직 없다. 작전수행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장비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예산 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 ⑥ 천문학적 유지운영비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 글로벌호크는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비용도 상상외로 많이 든다. 기체 대부분의 기술 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관리요원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 정기 정비도 미국으로 보내서 받아야 한다.
- 한국 국방연구원은 2012년에 실시한 HUAV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호크의 시간당 운용·유지비는 약 3만 5,000달러 수준으로 20년간 운영한다면 추가로 약 6조 원의 운용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호크의 제작사인 노스럽그루먼사에 따르더라도 글로벌 호크의 시간당 운용비용은 지난 201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만 4,000달러(약 2,450만 원)에 달한다. 일본 방위성이 2016년 계산한 운용유지비도 매년 100억엔(약 1,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만 불러오며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글로벌호크의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도입을 위한 내년도 예산 1,997억 4백만 원을 전액 삭 강해야 한다.

# (139) 전투예비탄약중 155mm 전단탄

#### 1. 개요

(단위:백만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2,877	2,87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대북 전단을 보다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할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傳單彈) 확보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신형 전단탄을 전투예비탄약으로 비축·저장하는 것은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위반

-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군은 2000년 4월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여 2011~2012년 사이 대량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때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대북 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한국군은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傳單彈)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올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부근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였다.

- 또한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서 신형 전단탄을 도입하여 전투예비탄약으로 비축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 국방부는 평시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단탄 비축사업의 목적을 강변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시 대비라 하더라도 그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왜냐하면 남과 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을 없을 것임"을 우리 민족 앞에 확약하였고, 또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대책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계적 군축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공고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까지 중지하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하여 전투예비탄약을 비축하고 더구나 전단탄처럼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것은 남쪽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의 진정성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약 더 이상 전쟁을 하지말자고 상대에게 약속하고서 뒤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와 장비, 선전물자등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축한다면 누가 불가침약속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 국방부는 전투예비탄약의 저장 특히 전단탄의 비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하는 전단탄 도입을 중단하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전단탄 도입 예산 28억 7,7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